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27호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규 칙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7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3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71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5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72호 2019.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65

## 훈 령

-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50호 2019.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 114
-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51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 124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1호 I-Food Park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12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2호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 사업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 13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3호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15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③단계) 변경 승인 ..... 176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35호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공고(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 18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37호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공고(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 18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3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19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3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19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4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동춘근린공원]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19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4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193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5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 19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56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 열람 ..... 19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63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 19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안) 공고 · 열람 ..... 20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7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 20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8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5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0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95호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재공고 ..... 20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01호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공고 ..... 207
-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19-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규) 공고 ..... 20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9-32호 송도국제도시 연구소 용지 내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1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4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216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5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219
- 인천광역시월미공원사업소공고 제2019-1호 2019년 월미공원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 222

<b>군 · 구</b>
--------------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9-186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226

규 칙
-----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가. 민선3기 교육감 공약 이행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개편하고
- 나. 이에 따른 각 기관(부서)의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개정근거

-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
- 다. 2019. 3. 1.자 조직개편 계획(안) (노사협력과-1340, 2019.11.01.) 및 2019. 3. 1.자 조직개편 변경(안) (노사협력과-1711, 2018.11.20.)

### 3. 주요내용

- 가. 2019. 3.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 나. 규칙 본문 규정: 사무분장 항목 ⇨ ‘별표’를 신설하여 정비

다. 사문화 된 업무 삭제 또는 용어에 대한 현행화

라. 분장사무의 용어 통일 및 기타 사항 정비 등

4. 전부개정규칙: 붙임

#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70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 과장 · 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소통협력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마을교육지원단을 둔다.

제4조(소통협력담당관) 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마을교육지원단) 마을교육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 민주시민교육과, 예산복지과, 노사협력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책기획과장 ·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예산복지과장 · 노사협력과장 ·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학교설립과, 교육재정과, 정보지원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학교설립과장·교육재정과장·정보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제10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보자료부, 과학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정보자료부장·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2절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제12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에 기획평가부, 연수운영부, 세계시민교육부, 행정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평가부장·연수운영부장·세계시민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3절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제14조(관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에 독서문화

과, 정보자료과, 평생교육운영과,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관리과를 둔다.

② 독서문화과장·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 제4절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제16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 제5절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제17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에 교학과, 관리과를 두며, 관할 수련시설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절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제19조(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절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제21조(원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절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제22조(관장)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 기획·정보부, 평생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평생교육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절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제24조(원장)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연구과장, 운영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 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교육지원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2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복지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0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미래교육지원센터)**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절 소속기관

**제32조(소속기관)**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과학교육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33조(과학교육관)** ①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심곡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4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되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제5장 사무분장

**제35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단·담당관별, 직속기관의 부(과)·장별, 교육지원청의 과 및 소속기관별 세부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에 두는 수련시설의 위치

명 칭	위 치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463
서사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 159
홍왕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854
국화리학생야영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282번길 48

[별표 2]

## 인천광역시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 46(주안동)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94-10(삼산동)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80-25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14(심곡동)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

[별표 3]

## 인천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304(장기동)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189(송림동)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 19 (부평동초교내) (부평동)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21 (도림동)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99번길 45 (검암동)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0 , 16 (강화읍)

[별표 4]

## 사무분장표 (제 35조 관련)

### 1. 본 청

[소통협력담당관]

과·담당관	분장사무
소통협력담당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교육 홍보 기본 계획 수립·추진·평가</li> <li>2. 인천교육 언론동향 분석</li> <li>3. 언론 브리핑 운영 및 언론 인터뷰·취재활동 지원</li> <li>4. 인천교육 홍보물(영상물, 간행물등)제작·보급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li> <li>5. 인천교육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li> <li>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망 구성·운영</li> <li>7. 인천교육소식 홈페이지 운영</li> <li>8. 기자실 운영</li> <li>9. 교육 관련 보도기사 스크랩 관리 업무</li> <li>10. 그 밖에 소통협력담당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감사관]

과·담당관	분장사무
감사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li> <li>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li> <li>3.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제외)</li> <li>4. 조사,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지도감독결과에 따른 징계의뢰 사항 포함)</li> <li>5.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li> <li>6.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조사 및 처리</li> <li>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li> <li>8. 공직기강(비위,진정,청원등) 관련 사항</li> <li>9. 교육부조리(부패방지, 공무원행동강령 등)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li> <li>10.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1. 교육지원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검토·조정</li> <li>12. 그 밖에 감사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마을교육지원단]

과·담당관	분장사무
마을교육지원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교육혁신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li> <li>4. 교육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학부모지원정책 수립</li> <li>6.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운영</li> <li>7. 학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li> <li>8. 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li> <li>9. 학부모지원센터 운영</li> <li>10. 그 밖에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 □ 정 책 국

## [정책기획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정책기획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 에 관한 사항</li> <li>2. 인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조정</li> <li>3. 교육균형발전계획 수립·관리 및 총괄</li> <li>4.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li> <li>5.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교육행정 혁신 및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li> <li>6. 교육지표·시책 수립</li> <li>7. 주요업무계획의수립·평가·조정</li> <li>8.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li> <li>9. 국정과제 추진 기획·조정</li> <li>10. 교육정책모니터링</li> <li>11. 제안제도 운영</li> <li>12. 인천미래교육위원회 운영</li> <li>13. 시의회·국회 주요업무 보고</li> <li>14.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회의 업무</li> <li>15.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li> <li>16. 시·도교육청 평가</li> <li>17. 교육지원청 평가</li> <li>18. 학교평가 관리</li> </ol>

과·담당관	분장사무
정책기획과	19.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0.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21.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2. 교육정책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23.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행정사무감사 제외) 25.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지침 등 발굴·정비 26.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및 공포·발령 27.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28.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2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30.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31. 고문변호사 운영 32.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33. 법령 등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34. 자치단체간 교육지원·연계 강화 협력 35. 정책국 업무 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민주시민교육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민주시민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li> <li>2. 미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li> <li>3.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li> <li>4. 행복배움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국제교육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li> <li>6. 교육국제화특구 업무</li> <li>7. 학교혁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li> <li>8.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도·감독</li> <li>9.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유치원·특수학교(급) 제외)</li> <li>10.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li> <li>11. 교재·교구 기준 관리</li> <li>12.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3.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4.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 지도</li> <li>15.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업무</li> <li>16.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7. 소수선택과목 개설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8. 교과중점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9.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 업무</li> <li>20. 평가방법개선(서술형, 논술형, 수행평가) 추진</li> <li>2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li> <li>22. 인천학술진흥재단 운영·지원</li> </ol>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민주시민교육과	23. 초·중·고 학사일정 및 학사선진화 운영 관리 24.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운영 지원 25. 인정도서 승인에 관한 사항 26. 교과서 선정·주문·공급 27. 다문화교육지원 28.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29.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30. 나라·국토사랑에 관한 사항 31. 인천사랑교육 32. 독도교육 업무 33. 역사 및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34. 강화 생태·평화·역사교육지구 운영 3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36. 교권 존중 프로젝트 37.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8. 학생·교직원 인권 보호 업무(인권보호관 운영) 39.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0. 학교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 41. 학생 사회참여 활동 운영 42. 청소년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43. 학생봉사활동 기본계획 수립 44.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 4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예산복지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예산복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li> <li>2.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지원비 관리 지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li> <li>3. 중·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li> <li>4. 지방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 수립·시행</li> <li>5.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li> <li>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7. 학생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li> <li>8. 학생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li> <li>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li> <li>10.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li> <li>11. 방과후학교 지원(자유수강권,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li> <li>12. 누리과정지원비 편성 및 관리</li> <li>13.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도서 선정업무 제외)</li> <li>14. 저소득층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5.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정보화, 중식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li> <li>16.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li> <li>17. 급식학교 운영 관리</li> <li>18.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유치원 포함)</li> <li>19. 학생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li> <li>20. 학교급식관련 경비 지원</li> <li>21. 학교우유 급식 관리</li> <li>22.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무상급식 포함)</li> <li>23.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4. 학교급식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5. 유치원 급식지도 관리 및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li> <li>27. 그 밖에 예산복지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노사협력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노사협력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li> <li>2. 교원단체연합회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li> <li>3.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li> <li>4.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의 조정·총괄에 관한사항</li> <li>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 수립</li> <li>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전보 등 인사업무</li> <li>7.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협의회 운영</li> <li>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총액인건비 관리</li> <li>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li> <li>1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전환 운영</li> <li>1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에 관한 업무</li> <li>1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업무</li> <li>13. 노사협의회 운영</li> <li>14. 노동관련 법령 해석 및 교육, 상담, 노무관리 운영실태 개선 등에 관한 사항</li> <li>15. 그 밖에 노사협력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안전총괄과]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학교안전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li> <li>2. 안전관리 통합매뉴얼 마련 및 운영실태 점검</li> <li>3. 안전대책상황반 운영</li> <li>4. 학교안전공제회 법인 업무 지원 및 관리</li> <li>5. 안전한국훈련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li> <li>6. 재난안전관리 세부집행 계획 수립</li> <li>7.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li> <li>8. 학교재난예방활동 계획 수립</li> <li>9. 재난 및 재해관리</li> <li>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 지원</li> <li>11. 학생안전관리 업무 기획 및 총괄</li> <li>12.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li> <li>1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li> <li>14. 학생소풍,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에 관한 사항</li> <li>15. 안전체험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16. 초등학생 안전한 등하굣길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7. 미세먼지 예방에 관한 사항</li> <li>18. 배움터지킴이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9. CCTV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0. 보안관리 업무</li> <li>21. 비상대비업무(충무계획의 수립·종합)</li> <li>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li> <li>23. 사회복무요원 배정, 근무지 지정 및 복무 관리</li> <li>24. 그 밖에 안전총괄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 교 육 국

## [초등교육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초등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실수업개선계획 수립 및 자료개발 보급</li> <li>2. 기초학력 향상 지원</li> <li>3. 컨설팅장학 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li> <li>4. 인성(효)교육 기본계획 수립</li> <li>5. 방과후 학교 운영·지도(기본계획 등 교육과정 관련 사항)</li> <li>6. 교과(교육)연구회 기본계획 수립</li> <li>7.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li> <li>8. 수업개선선도교사제 운영</li> <li>9. 초등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li> <li>10.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li> <li>11. 각종 연구대회 운영 총괄·조정</li> <li>12.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li> <li>13. 초등학습준비물지원 업무</li> <li>14. 초등교육실습협력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li> <li>15. 인성교육중심수업 지원</li> <li>16. 공립 초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 관리</li> <li>17. 공립 초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포함)</li> <li>18. 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li> <li>19. 초등교원 명예퇴직 및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li> <li>20. 초등 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li> </ol>

과·담당관	분장사무
초등교육과	21.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 명예퇴직 및 공적심사 등) 운영 22. 초등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23.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24. 초등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25. 초등교원 복무,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관한 사항 26. 초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7. 초등 수석교사제 선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8. 유아교육 기본계획 수립 29.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0. 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31.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32.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33. 특수교육운영계획 수립 3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3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6.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 지원 37. 특수학교(급) 설립 기본계획 수립 38.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 40. 교육국 업무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중등교육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중등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실수업개선계획 및 자료개발 보급</li> <li>2. 원어민교사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4.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사항</li> <li>5. 대학입학전형 및 대학진학관련 업무</li> <li>6.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입수능관련 업무</li> <li>7. 컨설팅장학 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li> <li>8. 학생 자율동아리 지원</li> <li>9. 교과(교육)연구회 기본계획 수립</li> <li>10. 중등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li> <li>11.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li> <li>12. 수업개선선도교사제 운영</li> <li>13. 문화예술교육 지원</li> <li>14. 인천교육연수원 운영 지원</li> <li>15.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추진</li> <li>16. 고교 재학생 병영 사무에 관한 사항</li> <li>17. 방송 및 미디어교육활용에 관한 사항</li> <li>18. 특성화중·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li> <li>19. 중등 수석교사제 선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li> <li>20.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li> <li>21. 자율고 및 기숙형 고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2. 예술계열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li> <li>23. 학생문화예술축제 발표회 지원</li> <li>24. 예술고교 및 예술교육중점학교 운영 지원</li> <li>25.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지원</li> <li>26. 공립 중등교원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 관리</li> </ol>

과·담당관	분장사무
중등교육과	27. 공립 중등교원의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 포함) 28. 중등 교육전문직원 관리 29. 중등교원 명예퇴직 및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30. 중등 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31. 교원 징계위원회 운영 32. 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33.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34.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35. 중등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36. 중등교원 복무,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관한 사항 37. 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38. 교원성과상여금 업무에 관한 사항 39. 교육전문직원 선정경쟁시험 관리 40.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리 41. 사립교원의 인사관리 42. 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 관리(특성화고등학교 제외) 43. 학생 전입학 관리(특성화고등학교 제외) 44. 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무 4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46.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7.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48.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49. 교원자격증 재교부 50. 그 밖에 중등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 [평생교육체육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평생교육체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li> <li>2.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li> <li>3.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li> <li>4. 제3호에 해당하는 무등록 교육기관의 단속</li> <li>5. 학원의 설립·폐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li> <li>6.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도</li> <li>7.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li> <li>8.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9.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li> <li>10.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li> <li>11. 체육관련 교육기관(학교포함)의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li> <li>12. 체육계열학교 체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컨설팅</li> <li>13.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li> <li>14. 체육특기자 심사</li> <li>15. 학생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6.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7. 학교체육연구대회에 관한 사항</li> <li>18. 운동부 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9. 학생건강증진 및 학교보건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li> <li>2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li> </ol>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평생교육체육과	2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2.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23.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유치원 포함) 24.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 관리(유치원 포함) 25. 학교보건실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6. 학교보건 연구학교 운영 지원 27. 학교설립용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 승인 28. 독서·토론·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29.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0.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1. 인문학 및 인문소양 교육 32. 청소년문화쉼터 및 사람책도서관 운영 지원 33. 그 밖에 평생교육체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창의인재교육과]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창의인재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각종학교포함, 이하 같다)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li> <li>2. 특성화고의 컨설팅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li> <li>3. 특성화고의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지도</li> <li>4. 산학협동,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li> <li>5. 특성화고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li> <li>6. 각급 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li> <li>7. 특성화고의 실험실습시설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li> <li>8.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과학고)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li> <li>9.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li> <li>10.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li> <li>11.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li> <li>13. 정보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li> <li>14.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li> <li>15. 교육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6. 교원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대회운영 포함)</li> <li>17. 소프트웨어 교육 및 디지털 교과서 등 정보교육 관련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li> <li>18. 교류협력 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li> </ol>

과·담당관	분장사무
창의인재교육과	19.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20. 학생 지식정보처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1. ICT교수학습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2.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 23.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지원 24.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5. 학교의 과학전용교실 확보 및 지원 26.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지원 2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2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9.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 지원 30.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31. 영재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 32.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3.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34. 해양교육에 관한 사항 35.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창의인재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 [학교생활교육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학교생활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생활지도 관련 업무</li> <li>2. 학교폭력 예방 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li> <li>3. 학교폭력발생 사안조사 및 민원처리(성폭력 사안처리 포함)</li> <li>4.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관한 사항</li> <li>5. Wee 프로젝트(학생상담활동 포함) 정책 관련 업무</li> <li>6. 대안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li> <li>7.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li> <li>8.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업무</li> <li>9. 학생선도위원회(협의회) 업무</li> <li>10.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 지원 업무</li> <li>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업무</li> <li>12. 학업중단 예방업무</li> <li>13.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li> <li>14. 재입학생 적응교육</li> <li>15.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운영</li> <li>16. 무등록 대안 교육 시설 단속</li> <li>17.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li> <li>1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li> <li>19. 학생정신건강에 관한 사항</li> <li>20. 성 평등에 관한 사항</li> <li>2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li> <li>22. 성교육에 관한 사항</li> <li>23. 성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li> <li>24. 그 밖에 학교생활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 행정국

## [총무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총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인관수</li> <li>2. 당직관리</li> <li>3. 청사 관리</li> <li>4.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본청배정차량 운영·관리</li> <li>5. 부설주차장 운영·관리</li> <li>6.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li> <li>7. 교직원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li> <li>8. 교직원수련원운영·지도</li> <li>9. 연금,대여장학금,국민건강보험,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li> <li>10. 지방직 공무원 인사, 연수, 상훈 및 복무관리</li> <li>11. 공무원증 발급</li> <li>12. 회계직 공무원 임명·해임</li> <li>13. 각급기관 특수운영직군 운영 및 관리(청소 및 당직근로자)</li> <li>14.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원외여행심사위원회 등 운영</li> <li>1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6.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7.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BRM) 운영</li> <li>18. 정보공개제도 운영</li> <li>19.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li> <li>20. 인천교육사료보관소 운영</li> <li>21.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도</li> <li>22. 민원상담 및 제증명 등 민원처리</li> <li>23. 민원의 접수 및 관리</li> <li>24. 행정서비스현장제 운영</li> <li>25. 문서 접수·발송·배부</li> <li>26. 그 밖의 다른 국·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 [학교설립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학교설립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교육행정조직 관리</li> <li>2. 지방직 공무원 정원 관리</li> <li>3. 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관한사항</li> <li>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li> <li>6. 사무분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7. 교육행정 업무편람 발간</li> <li>8.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li> <li>9.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배분</li> <li>10. 지방이양·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에 관한 업무</li> <li>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제</li> <li>12. 의무취학 관리</li> <li>13. 학교군·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4. 개발지역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 협의</li> <li>15.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li> <li>16. 학교용지 선정 업무에 관한 사항</li> <li>17.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공립학교)에 관한 사항</li> <li>18. 신설학교 개교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li> <li>19. 교명심의위원회와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운영</li> <li>20.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관한사항</li> <li>21. 유치원 설립·폐지와 변경인가에 관한 지도감독</li> <li>2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사립유치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또는 설치)·폐지(변경사항 포함)</li> <li>2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전·재배치 기획</li> <li>24.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되는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li> <li>25. 그 밖에 학교설립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교육재정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교육재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 관리</li> <li>2. 자금관리와 차입금 및 상환</li> <li>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li> <li>4. 교육금고 지도감독</li> <li>5.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li> <li>6. 채권관리</li> <li>7. 세출예산의 집행</li> <li>8.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li> <li>9.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시행</li> <li>10. 통합급여 관리</li> <li>11. 공사계약 및 관리</li> <li>12. 계약심의위원회 운영</li> <li>13.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중소기업(여성기업) 생산품 구매관리</li> <li>1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관리</li> <li>15.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li> <li>16.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학교제외)에 관한 사항</li> <li>17.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사항</li> <li>18. 공유재산 실태조사</li> <li>19. 공유재산심의회 운영</li> <li>20.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li> <li>21.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li> <li>22.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사립유치원 포함)</li> <li>23. 사립학교의 재정결합보조금 등 각종 재정보조</li> <li>2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li> <li>25.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li> <li>26. 그 밖에 교육재정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정보지원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정보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정보화 기본·시행 계획 수립 및 조정</li> <li>2. 교육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운영</li> <li>3.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축·운영</li> <li>4. 나이스시스템 구축·운영</li> <li>5.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운영</li> <li>6.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li> <li>7.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li> <li>8. 정보기술아키텍처(범정부EA) 구축에 관한 사항</li> <li>9.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li> <li>10. 지방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li> <li>11. 학교홈페이지 통합 구축·운영</li> <li>12. 교육정보화 기기보급에 관한 사항</li> <li>13.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li>14. 학내전산망(유무선) 구축 지원</li> <li>15. 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li> <li>16.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구축·운영</li> <li>17.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축·운영</li> <li>1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시행</li> <li>19. 개인정보보호</li> <li>20. 정보보안</li> <li>21.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li> <li>22. 그 밖에 정보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교육시설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교육시설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기획업무(표준 설계 포함)</li> <li>2.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li> <li>3. 교육시설물 안전점검</li> <li>4.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조정·지도</li> <li>5. 위험시설물 판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학교시설사업의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li> <li>7. 민간투자사업 기획·고시·협약·시공 및 정부지급금·성과평가·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li> <li>8. 분청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li> <li>나. 지도</li> <li>다. 하자검사 및 보수</li> </ol> </li> <li>9. 학교 시설 지원 총괄</li> <li>1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신설 및 전면개축·이전 재배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li> <li>나. 건축 승인 및 협의</li> <li>다. 지도 감독 및 검사</li> </ol> </li> <li>11.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li> <li>12. 시설복합화사업 추진</li> <li>13. 그 밖에 교육시설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부서명	분장사무
교육정보자료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li> <li>3.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교육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li> <li>7. 사이버가정학습 인천 e학습터 운영</li> <li>8.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운영</li> <li>9. 영상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0. 문헌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1.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li> <li>12. 초등교과보완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li> <li>13.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li> <li>14. 그 밖의 교육정보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li> </ol>
과학교육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기술정보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2. 과학교육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li> <li>3.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과학기교재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li> <li>5. 과학교육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6.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동아리 지도에 관한 사항</li> <li>7. 각종 과학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li> <li>8. 인천학생과학관 운영·관리 및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9. 과학관련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의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li> </ol>

부서명	분장사무
총무부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평가부	1. 연수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교원 및 교수요원 연수(수요조사와 선발 포함)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연수운영부	1. 중등교원 및 보건·영양교사 연수(수요조사와 선발 포함)에 관한 사항 2. 제1호 및 제3항제2호와 제3항제3호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 연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산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세계시민교육부	1.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어민교사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시민교육 및 외국어교육을 위한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소관 특별실 운영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 세계시민교육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세계시민교육연수 및 외국어연수에 관한 사항
행정연수부	1. 지방공무원 연수 및 교육연수생 선발(기본교육, 위탁교육, 타 교육훈련기관 교육 제외)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행정 연수에 관한 사항
총무부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6.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부서명	분장사무
독서문화과	1.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2. 순회문고 운영 3.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서관리·보존·통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6.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7.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정보자료과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집 2. 도서관 자료의 정리분류 및 목록 작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수집 4. 도서관 자료의 조사 연구 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정보 및 학술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9. 자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운영과	1.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추진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3. 평생학습 정보수집 4. 지식정보취약계층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5. 각급학교 평생교육 지원
관리과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단, 인천광역시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의 독서문화과장은 평생교육 운영과 업무를 포함하여 분장한다.

##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부서명	분장사무
교학과	1.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관리과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학생교육원 시설 및 차량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환경체험 학습장	1. 해양 환경 및 생태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서사체험학습장	1. 통일 평화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홍왕체험학습장	1. 역사 문화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국화리학생 야영장	1. 숲 생태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서명	분장사무
운영부	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연극·영화·음악·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교축제 문화 지원 6. 학생클럽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7.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8. 청소년 상담 9. 예술꿈학교 및 학생자치문화예술동아리 운영 10.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무부	1. 관인관수 및 일반사무 2. 인사·복무 및 보안 3. 예·결산 및 회계 4.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5.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재산관리 7. 도서실 운영 8. 정보화 관련 업무 9.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정보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li> <li>2. 평생교육기관 상호간 연계 체제 구축</li> <li>3. 대외협력 업무 및 홍보</li> <li>4. 어린이 도서관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li> <li>5. 사이버학습관 운영 및 전산 시스템 관리</li> <li>6. 학습자료 수집 및 정리</li> <li>7. 독서 프로그램 운영</li> <li>8.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기획·운영</li> <li>9.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li> </ol>
평생교육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2. 학부모교육센터 운영</li> <li>3.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4.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li> <li>5. 학습동아리 운영</li> <li>6.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li> <li>7. 평생교육 상담 및 취업 지원</li> <li>8. 학점은행제 운영</li> </ol>
총무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li> <li>2. 인사·복무관리</li> <li>3. 급여,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직원후생 관리</li> <li>4.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li> <li>5. 청사 및 차량 운영관리</li> <li>6. 기록물관리</li> <li>7. 물품, 재산 및 시설관리</li> <li>8.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연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유아교육 관련 연구 수행 및 교원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li> <li>5.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기획연구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운영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3. 유아교육 교육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유아교육 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li> </ol>
관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인관수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예·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li> <li>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ol>

## 3.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부서명	분장사무
초등교육과	1. 학교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5.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7. 취학전 교육 8. 초등 독서·토론·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의 인사,연수,복무,상훈 및 국외 여행에 관한 사항 10.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11.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2. 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13.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학포함)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4. 계기교육(통일,경제,에너지)에 관한 사항 15. 초등학교,유치원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 지원 16.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과연구회 운영 17. 초등학교 및 유치원 컨설팅장학 및 연구·실험·연구학교(유치원) 운영 지도 18. 초등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학교 운영(교육과정 포함) 및 사교육비 경감 관련 업무 19. 청소년 단체활동 권장 및 지원 20. 유치원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유치원 관리 운영 지원 22.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2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초등교육과	24. 교권 존중 프로젝트 25. 학생·교직원 인권 보호 업무 26.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27. 학부모지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28. 지역사회 협력 29. 학부모회 운영 30.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1. 초등 역사 및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중등교육과 주관 업무의 유·초등학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교육지원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등교육과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중학교 컨설팅 장학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원 3.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4. 입학, 전·편입학 관리 5. 중학교 교수학습지원 자료의 개발·보급 6. 재입학생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 8. 중학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9. 수준별 수업 및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0. 중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사립중학교 교원의 인사·연수·복무·상훈 및 국외여행 12. 중학교 교사 징계에 관한 사항 13. 학생진로·진학 관련업무 14. 중학교 교과연구회 및 교과연구활동 지원 15. 생활교육 관련 업무 16.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7.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1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부서명	분장사무
중등교육과	1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20. 부적응 학생 지원 21. Wee 센터 운영 22.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24.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성교육 포함) 25. 현장교육 및 학생수련활동 26. 과학교육관 운영 및 과학교육행사 지원 27. ICT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8.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영재교육원 운영 포함) 29.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사항 30. 교육행정정보화 및 전산관련 업무 31.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 3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3.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34. 체육교육과정의 운영 35.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6. 체육특기자 심사 37. 운동부 지도자 관리 38. 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경감 관련 업무 39. 중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40.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1. 학교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 42. 학생 사회참여 활동 운영 43.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 43.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 44.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45. 다문화교육지원 46. 중등 독서·토론·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7. 중등 역사 및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8. 그 밖에 초등교육과 주관 업무의 중학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9. 그 밖에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평생교육건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원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독서실 포함)에 관한 사항</li> <li>2. 과외교습소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 및 폐지</li> <li>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li> <li>4.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감독(독서실 포함)</li> <li>5. 평생교육시설 무등록 교육기관의 단속</li> <li>6.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지도·감독</li> <li>7.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수리 및 변경 및 폐지</li> <li>8. 학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li> <li>9.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li> <li>10.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li> <li>11.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에 관한 사항</li> <li>12.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li> <li>13. 학생(유치원생 포함)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 관리</li> <li>14. 학교(유치원 포함) 먹는 물 위생 관리</li> <li>15. 학교(유치원 포함) 교사 내 공기 질 유지 관리</li> <li>16. 그 밖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li> <li>17. 교육환경평가 심의 및 이행사항 확인</li> <li>18.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li> <li>19. 교직원 응급처치교육</li> <li>20.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 관리</li> <li>21. 학교(유치원 포함) 공기정화장치 관리</li> <li>22. 식생활 안전관리</li> <li>23. 유치원·학교 급식 및 위생 안전관리</li> <li>24.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li> </ol>

## [행정지원국]

부서명	분장사무
학교운영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li> <li>2. 관인관수 및 보안 관리</li> <li>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민원에 관한 사항</li> <li>5. 교육정책 홍보 및 공보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li> <li>7. 지방공무원의 인사, 징계, 상훈 및 복무관리</li> <li>8. 지방공무원의 국외여행</li> <li>9.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해임</li> <li>10. 비상대비업무 및 민방위 훈련</li> <li>11. 직장예비군·민방위대운영 및 사회복지요원 관리</li> <li>12. 청사 및 차량관리</li> <li>13. 행정권한의 위임전결, 보고통제, 간행물 발간 조정</li> <li>14.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 사항</li> <li>15. 공직기강(비위,진정,청원 등 제외)확립 및 추진</li> <li>16. 상급기관 및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의 수감 준비 및 결과 처리</li> <li>17.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지방의회 관련 사항</li> <li>18. 교육부조리(부패방지,공무원행동강령 등)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li> <li>19.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결과 처리</li> <li>20. 징계의결 요구 신청</li> <li>21. 교육행정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 추진</li> <li>22.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li> <li>23. 제안제도 운영</li> <li>24.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관리</li> <li>25. 성과관리·지식관리시스템 운영</li> <li>26. 업무관리시스템 운영</li> <li>2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li> <li>28. 학교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li> <li>29. 사립 각급 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사립유치원 포함)</li> <li>30. 사립 중학교 재정 보조</li> </ol>

부서명	분장사무
학교운영지원과	31.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3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33. 의무취학과 학교군 및 학구의 운영 34.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3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포함)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36. 교육감 소속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37.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38. 그 밖에 청내 다른국, 다른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복지재정과	1. 세출예산 집행 2.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세입 징수 3. 학비감면 및 대여장학금 관리 4.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세출예산 집행의 원인 행위 7. 공사, 제조, 용품 구입 수선의 검사 및 입회 8. 급여 관리 9.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10. 교과용 도서 수급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포함)의 국·공유재산 관리지원 업무 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 나. 재난 및 재해 관리 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 라. 일반재산(폐교재산 등)의 유지 관리 12. 공유재산심의회 지원 업무 13. 학교 용지의 시설 결정 14. 교육지원청 재산의 취득·처분 및 교환(학교제외) 15. 교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연금 관련 업무 나. 공무원 건강보험 관련 업무 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련 업무 라. 직장어린이집 관련 업무

부서명	분장사무
복지재정과	16.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가. 누리과정 지원 나.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 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라.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바.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사. 교복비 및 저소득층 앨범비 지원 17.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1.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의 시설 증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및 승인(설계포함) 나. 건축 승인 및 협의 다. 지도·감독 및 검사 라. 하자 검사 및 보수 3. 학교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관리 4.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5. 학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책결상 및 사물함 지원·관리 7.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성과평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점검

## [강화교육지원청]

부서명	분장사무
교육지원과	타 지원청 교육지원국 소관 사항
행정지원과	타 지원청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
미래교육지원센터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 Wee센터 운영 3.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학부모지원 및 교육 포함) 4. 학원 및 평생교육 관리

## [소속기관]

부서명	분장사무
과학교육관	1. 과학 관련 각종 교사연수 지원 2.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활동 지원 3. 학교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관 안전 및 시설 관리
특수교육지원센터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지원 2.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 지원 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4.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지원 5. 통합교육 및 특기적성교육 지원 6. 치료교육 및 직업전환교육 지원 7.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8. 그 밖에 특수교육 정책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가. 교육부 2019.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변경하고자 함
- 나.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개정근거

-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및 제20조(정원의 규정)
- 나. 2019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5452(2018.09.27.)호]

### 3.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 변경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314명→3,358명(44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3,101명→3,134명(33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208명→219명(11명 증원)
- 나.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 반영
- 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직렬·직급별 정원 조정

4.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71호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2019.03.01.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358	9	823	472	2,054	
정무직	정무직 계	1	0	1	0	0	
	교육감	1	0	1	0	0	
일반직	일반직 계	3,134	9	681	390	2,054	
	3급	부이사관	6	0	6	0	0
	4급	소계	27	1	22	4	0
		서기관	17	1	16	0	0
		서기관·기술서기관	10	0	6	4	0
	5급	소계	173	1	67	17	88
		교육행정	124	1	37	9	77
		교육행정·사서	7	0	5	0	2
		사서	12	0	12	0	0
		교육행정·행정(전산)	3	0	2	0	1
		행정(전산)	2	0	2	0	0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8	0	2	4	2
		교육행정·시설	1	0	1	0	0
		교육행정·시설·공업	14	0	4	4	6
		시설·공업	2	0	2	0	0
		6급	소계	837	3	222	107
	교육행정		578	3	107	48	420
	교육행정·사서		18	0	16	0	2
	교육행정·사서·전산		2	0	2	0	0
	사서		34	0	34	0	0
	전산		14	0	10	4	0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19	0	8	8	3
	간호		1	0	1	0	0
	공업		7	0	2	1	4
	시설·공업		14	0	12	2	0
	교육행정·시설·공업		50	0	11	36	3
	교육행정·전산		5	0	3	0	2
	조리		6	0	0	0	6
	시설관리		58	0	1	3	54
	운전		8	0	5	2	1
	전화상담운영		1	0	1	0	0
	전기운영		3	0	2	0	1
기계운영	3		0	2	0	1	
열관리운영	6	0	2	1	3		
사무운영	10	0	3	2	5		
7급	소계	938	2	256	184	496	
	교육행정	550	2	124	116	308	

구 분		총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사서	38	0	38	0	0	
	전산	19	0	18	1	0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31	0	6	24	1	
	교육행정·전산	15	0	9	4	2	
	교육행정·사서	8	0	2	5	1	
	공업	15	0	7	3	5	
	방송통신	1	0	0	0	1	
	시설·공업	2	0	2	0	0	
	교육행정·시설·공업	23	0	2	18	3	
	조리	33	0	4	0	29	
	시설관리	134	0	9	2	123	
	운전	19	0	7	4	8	
	통신운영	0	0	0	0	0	
	전기운영	5	0	4	0	1	
	기계운영	4	0	1	0	3	
	열관리운영	9	0	6	1	2	
	사무운영	32	0	17	6	9	
	8 급	소계	1,146	1	102	78	965
		교육행정	635	0	23	56	556
		전산	7	0	2	5	0
		사서	5	0	5	0	0
		보건	5	0	0	5	0
		교육행정·사서	3	0	1	0	2
		교육행정·전산	1	0	0	0	1
		간호	1	0	1	0	0
		공업	13	0	8	0	5
		교육행정·시설·공업	10	0	1	9	0
		조리	23	0	4	0	19
	시설관리	375	0	18	2	355	
	운전	15	0	2	1	12	
	통신운영	2	0	0	0	2	
	전기운영	8	0	3	0	5	
	기계운영	9	0	1	0	8	
	사무운영	34	1	33	0	0	
전문 경력관	소계	7	1	6	0	0	
	가군	1	0	1	0	0	
	비상계 획담당관	1	0	1	0	0	
	나군	4	1	3	0	0	
	학생수련지도사	2	0	2	0	0	
	속기사	1	1	0	0	0	
	촬영기사	1	0	1	0	0	
	다군	2	0	2	0	0	
	촬영기사	1	0	1	0	0	
	학생수련지도사	1	0	1	0	0	

구 분		총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연구직	연구사 학예연구사	2	0	2	0	0
별정직	별정직 계	2	0	2	0	0
	5급 상당	소계	1	0	1	0
		비서관	1	0	1	0
	6급 상당	소계	1	0	1	0
		비서	1	0	1	0
교육 전문 직	교육전문직원 계		219	0	137	8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0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31	0	22	9
	장학사·교육연구사		160	0	96	64

## 신·구조문 대비표

2019.03.01.

구 분		총 계		시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총계		3,314	<u>3,358</u>	9	9	797	<u>823</u>	456	<u>472</u>	2,052	<u>2,054</u>	
정무직	정무직 계	1	1	0	0	1	1	0	0	0	0	
	교육감	1	1			1	1					
일반직	일반직 계	3,101	<u>3,134</u>	9	9	664	<u>681</u>	376	<u>390</u>	2,052	<u>2,054</u>	
	3급	부이사관	6	6			6	6				
	4급	소계	26	<u>27</u>	1	1	21	<u>22</u>	4	4	0	0
		서기관	16	<u>17</u>	1	1	15	<u>16</u>				
		서기관·기술서기관	10	10			6	6	4	4		
	5급	소계	170	<u>173</u>	1	1	64	<u>67</u>	17	17	88	88
		교육행정	123	<u>124</u>	1	1	36	<u>37</u>	9	9	77	77
		교육행정·사서	6	<u>7</u>			4	<u>5</u>			2	2
		사서	12	12			12	12				
		교육행정·행정(전산)	2	<u>3</u>			1	<u>2</u>			1	1
		행정(전산)	2	2			2	2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8	8			2	2	4	4	2	2
		교육행정·시설	1	1			1	1				
		교육행정·시설·공업	14	14			4	4	4	4	6	6
		시설·공업	2	2			2	2				
	6급	소계	830	<u>837</u>	3	3	220	<u>222</u>	103	<u>107</u>	504	<u>505</u>
		교육행정	574	<u>578</u>	3	3	104	<u>107</u>	48	48	419	<u>420</u>
		교육행정·사서	17	<u>18</u>			15	<u>16</u>	0	0	2	2
		교육행정·사서·전산	2	2			2	2				
		사서	34	34			34	34				
		전산	14	14			14	<u>10</u>	0	<u>4</u>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18	<u>19</u>			7	<u>8</u>	8	8	3	3
		간호	1	1			1	1				
		공업	7	7			2	2	1	1	4	4
		시설·공업	14	14			12	12	2	2		
		교육행정·시설·공업	49	<u>50</u>			10	<u>11</u>	36	36	3	3
		교육행정·전산	5	5			3	3			2	2
조리		6	6							6	6	
시설관리		58	58			1	1	3	3	54	54	
운전		8	8			5	5	2	2	1	1	
전화상담운영		1	1			1	1					
전기운영		3	3			2	2			1	1	
기계운영	3	3			2	2			1	1		
열관리운영	6	6			2	2	1	1	3	3		
사무운영	10	10			3	3	2	2	5	5		
7급	소계	923	<u>938</u>	2	2	246	<u>256</u>	179	<u>184</u>	496	496	
	교육행정	537	<u>550</u>	2	2	120	<u>124</u>	107	<u>116</u>	308	308	

구 분		총 계		시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사서	38	38			38	38				
	전산	19	19			14	18	5	1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30	31			5	6	24	24	1	1
	교육행정·전산	15	15			9	9	4	4	2	2
	교육행정·사서	7	8			1	2	5	5	1	1
	공업	15	15			7	7	3	3	5	5
	방송통신	1	1							1	1
	시설·공업	2	2			2	2				
	교육행정·시설·공업	23	23			2	2	18	18	3	3
	조리	33	33			4	4			29	29
	시설관리	134	134			9	9	2	2	123	123
	운전	19	19			7	7	4	4	8	8
	전기운영	5	5			4	4			1	1
	기계운영	4	4			1	1			3	3
	열관리운영	9	9			6	6	1	1	2	2
사무운영	32	32			17	17	6	6	9	9	
8급	소계	1,139	1,146	1	1	101	102	73	78	964	965
	교육행정	635	635			23	23	56	56	556	556
	전산	7	7			2	2	5	5		
	사서	5	5			5	5				
	보건	5	5					5	5		
	교육행정·사서	3	3			1	1			2	2
	교육행정·전산	1	1							1	1
	간호	1	1			1	1				
	공업	13	13			8	8			5	5
	교육행정·시설·공업	4	10			0	1	4	9		
	조리	23	23			4	4			19	19
	시설관리	374	375			18	18	2	2	354	355
	운전	15	15			2	2	1	1	12	12
	통신운영	2	2							2	2
	전기운영	8	8			3	3	0	0	5	5
	기계운영	9	9			1	1			8	8
	사무운영	34	34	1	1	33	33	0	0	0	0
전문 경력관	소계	7	7	1	1	6	6	0	0	0	0
	가군	1	1	0	0	1	1	0	0	0	0
	비상계획담당관	1	1			1	1				
	나군	4	4	1	1	3	3	0	0	0	0
	학생수련지도사	2	2			2	2				
	속기사	1	1	1	1						
	촬영기사	1	1			1	1				
	다군	2	2	0	0	2	2	0	0	0	0
촬영기사	1	1			1	1					

구 분			총 계		시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학생수련지도사	1	1			1	1				
연구직	연구사	학예연구사	2	2	0	0	2	2	0	0	0	0
별정직	별정직 계		2	2	0	0	2	2	0	0	0	0
	5급 상당	소계	1	1	0	0	1	1	0	0	0	0
		비서관	1	1			1	1				
	6급 상당	소계	1	1	0	0	1	1	0	0	0	0
		비서	1	1			1	1				
교육 전문 직원	교육전문직원 계		208	<u>219</u>	0	0	128	<u>137</u>	80	<u>82</u>	0	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28			19	19	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28	<u>31</u>			19	<u>22</u>	9	9		
	장학사·교육연구사		152	<u>160</u>			90	<u>96</u>	62	<u>64</u>		

# 2019.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 1. 제정이유

2019년 3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  
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2. 제정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042호,2018.12.31.,]

2019. 3. 1.자 본청 조직개편 계획안 [노사협력과-1340호(2018.11.01.)]

2019. 3. 1.자 본청 조직개편 변경안 [노사협력과-1718호(2018.11.21.)]

##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추진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함(안 제2조 ~ 안 제17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자 명단 변경(제2조)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정(2014.6.11., 시행 2014.9.12., 대통령령 제2537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 법제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의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5조)

-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 심의하도록 규정 신설

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 부속 규정(직종별 협약) 2018.12.27.」에 따른 직종명칭 변경

- (당초)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행정실무원  
(변경)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전산실무사, 행정실무사, 교무행정실무사(통합)

마. 띄어쓰기 및 경미한 문구 수정

4. 일괄개정규칙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72호

## 2019.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책국장·교육국장·행정국장
4. 감사관

제3조(「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

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노사협력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과 제1항제2호의 민간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별표 제4호 서식 참조란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부교육감”을 “부교육감,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학교설립기획과장”을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을 “학교급별위원회의”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행정실무원을”을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전산실무사, 행정실무사, 교무행정실무사(통합)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설립기획과장”을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으로 한다.

제7조 중 “복지재정과에”를 “교육재정과에”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예산복지과장”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각각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각각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각각 “교육재정과장”으로, 같은 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각각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정책기획조정관”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 및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 및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복지재정과장에게”를 “교육재정과장에게”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복지재정과장과”를 “교육재정과장과”로 한다.

제86조제4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08조 중 “복지재정과장에게”를 각각 “교육재정과장에게”로 한다.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지재정과장이”를 각각 “교육재정과장이”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복지재정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제14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각각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 지정표 중 본청 지정관직란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복지재정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예산복지과장, 초등교육과장”으로, “예산담당서기관,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예산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4호 서식]

## 소송수행결과보고서

수 신 : 인천광역시교육감

참 조 : 정책기획과장

다음 사건의 소송수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 건	법원	호	사건
원 고		피 고	
진행일자		다음기일	
판 결 문 수령일자		상 소 불변기간	

진행내용

※붙 임 : 관계 입증서류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직종(제8조 관련)**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	공연장운영보조요원	20	운전원
2	과학관해설사	21	원어민코디네이터
3	<b>과학실무사</b>	22	유치원교육실무원
4	<b>교무실무사</b>	23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5	교육복지사	24	장애교사보조인력
6	구 육성회직원	25	전문상담사
7	급식배식원	26	<b>전산실무사</b>
8	기업회계직원	27	<b>조리실무사</b>
9	당직전담직원	28	청소원
10	도서관운영인력	29	취업지원관
11	<b>초등돌봄전담사</b>	30	치료사
12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31	통학차량실무원
13	사감	32	<b>특수교육실무사</b>
14	사서(사서실무원)	33	특수진로코디네이터
15	시설관리실무원	34	특수학급종일제강사
16	영상실무원	35	평생교육사
17	영양사	36	학부모상담사
18	영어센터부장	37	향토사
19	운동부지도자	38	<b>행정실무사</b>
		39	<b>교무행정실무사(통합)</b>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시행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의 명명	회계직의 지위	회 계 직 명	지 정 관 직
본 청	총괄직	회계책임관 징 수 관 재 무 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 출 원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u>교육재정과장</u>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u>교육재정과장</u> <u>교육재정과장</u> , 각 과장·담당관(일상경비에 한함)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사무관 각 과·담당관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u>교육재정과</u> 는 제외),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장학관 <u>교육재정과</u> 의 세입·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교육지 원청	주임직	징 수 관 재 무 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 출 원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지출업무담당주사(팀장)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각 과장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세입업무담당주사(팀장)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팀장,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세입·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관 서 (제1관 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학교회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담당 관서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명칭	회계직명	지정관직
본청	총괄 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분임물품관리관	○ 교육재정과장 (행정국장의 권한을 분임) ○ 각 과장·담당관
	물품출납공무원	교육재정과 물품업무 담당 사무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과 물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국장 ○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분임물품관리관	○ 복지재정과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장의 권한을 분임) ○ 각 과장
	물품출납공무원	○ 복지재정과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 ○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과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장학사)
관서	물품관리관	관서의 장
	물품출납공무원	○ 학교 : 행정실장(교육행정직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 학교 외 관서 : 물품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p>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u>정책기획조정관</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중등교육과장, <u>복지재정과장</u>, 교육시설과장이 된다.</p> <p>2. (생략)</p> <p>③·④ (생략)</p> <p>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생략)</p> <p>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은 <u>정책기획조정관</u>,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은 담당관·과장으로, 지역교육청은 5급 또는 5급 상당(강화교육지원청은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정책국장</u> ----- -----.</p> <p>1. ----- ----- <u>교육재정과장</u> ----- -----.</p> <p>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정책국장</u> ----- ----- ----- ----- ----- ----- ----- -----</p>

현행	개정안
<p>이 임명한다. ③ ~ ⑦ (생략)</p>	<p>-----. ③ ~ ⑦ (현행과 같음)</p>
<p><b>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b>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정책기획조정관</u>으로 한다. ④ (생략)</p>	<p>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정책국장</u> ----- -----. ④ (현행과 같음)</p>
<p><b>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b>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6조에 따라 <u>정책기획조정관</u>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정비안의 심사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된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p>	<p>제2조(정의)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u>----- -----.  제5조(정비안의 심사 요청) ----- ----- -----</p>

현 행	개 정 안
<p>서류를 첨부하여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 <u>법제업무 담당</u> <u>부서의 장</u>----- .</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제6조(심사) ① <u>주관부서의 장</u>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u>정책기획조정관</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p>	<p>제6조(심사) ① ----- ----- <u>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u>----- -----.</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② <u>정책기획조정관</u>은 정비안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u>주관부서의 장</u>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u>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u>----- ----- ----- -----.</p>
<p>제7조(수정요구 등) <u>정책기획조정관</u>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수정요구할 수 있다.</p>	<p>제7조(수정요구 등) <u>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u>----- -----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정정비) <u>정책기획조정관</u>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u>주관부서의 장</u>에게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이때 촉구를 받은 <u>주관부서의 장</u>은 특별한 사</p>	<p>제8조(지정정비) <u>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u>----- ----- ----- -----.</p>

현행	개정안
<p>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p>	<p>----- -----.</p>
<p>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 ----- -----.</p>
<p>제11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교육국장, 행정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노사협력과장이 된다.</p>	<p>제11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노사협력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p>
<p>&lt;신설&gt;</p>	<p>2.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②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과 제1항제2호의 민간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의·의결</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5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u>10일</u> 전까지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9조(보고 및 공포안 작성) 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되어 온 조례안은 <u>정책기획조정관</u>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포안을 작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은 <u>정책기획조정관</u>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포안을 작성한다. 다만, 교육부에서 내용의 수정을 지시(권고)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 공포안을 작</p>	<p><u>한다.</u></p> <p>③ <u>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u></p> <p>제15조(심의절차) ① ----- ----- <u>5일</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보고 및 공포안 작성) ① ----- ----- <u>법제업무 담당부서</u> <u>의 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u>----- ----- -----.</p>

현 행	개 정 안
<p>성한다.</p> <p>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훈령안은 <u>정책기획조정관</u>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발령안을 작성한다.</p> <p>제20조(공포 및 발령) ① <u>정책기획조정관</u>은 조례공포안을 인천광역시에 이송하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 규칙은 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한다.</p> <p>② 훈령은 <u>정책기획조정관</u>이 일련번호를 발령대장에 기재한 후 발령한다.</p> <p>③ (생략)</p>	<p>---.</p> <p>④ ----- - <u>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u>----- ----- -.</p> <p>제20조(공포 및 발령) ① <u>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u>----- ----- ----- -----.</p> <p>② ----- <u>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p><b>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b></p> <p>제3조(소송의 총괄 및 소관부서 지정) ①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u>정책기획조정관</u>이 총괄하고,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p>	<p>제3조(소송의 총괄 및 소관부서 지정) ① ----- ----- ----- ----- ----- ----- - <u>정책기획과장</u>----- ----- -----</p>

현행	개정안
<p>“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p>	<p>----- ----- -----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제소 및 응소)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소 또는 응소를 요구하여야 한다.</p>	<p>제4조(제소 및 응소) ① ----- ----- ----- ----- ----- ----- <u>정책기획과</u> <u>장</u>-----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로부터 제소 또는 응소요구를 받은 <u>정책기획조정관</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제소 또는 응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 ----- - <u>정책기획과장</u>----- ----- -----.</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제1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p>	<p>제1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p>

현 행	개 정 안
<p>치) ①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u>정책기획조정관</u>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1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u>정책기획조정관</u>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 패소확정된 사건 중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u>정책기획조정관</u>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본청 소관 소송 : 본청 <u>감사담당관실</u></p> <p>2. 3. (생략)</p> <p>제19조(포상금 지급)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u>정책기</u></p>	<p>치) ①----- ----- <u>정책</u> <u>기획과장</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 <u>정책</u> <u>기획과장</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 ----- <u>정책기획과장</u>----- ----- ----- ----- -----.</p> <p>1. ----- <u>감사</u> <u>관</u></p> <p>2. 3. (현행과 같음)</p> <p>제19조(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정책기</u></p>

현행	개정안																														
<p><u>획조정관</u>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하여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p>	<p><u>획과장</u>----- ----- ----- -----.</p>																														
<p>[별표 4] 소송수행결과보고서 수신 : 인천광역시교육감 참조 : <u>정책기획조정관</u> 다음 사건의 소송수행 결과를 보고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사 건</th> <th colspan="3">법원 호 사건</th> </tr> <tr> <th>원 고</th> <th>피 고</th> <th></th> </tr> </thead> <tbody> <tr> <td>진행일자</td> <td></td> <td>다음기일</td> <td></td> </tr> <tr> <td>판결문 수령일자</td> <td></td> <td>상 소 불변기간</td> <td></td> </tr> </tbody> </table> <p>진행내용</p> <p>※불 임 : 관계 입증서류</p>	사 건	법원 호 사건			원 고	피 고		진행일자		다음기일		판결문 수령일자		상 소 불변기간		<p>[별표 4] 소송수행결과보고서 수신 : 인천광역시교육감 참조 : <u>정책기획과장</u> 다음 사건의 소송수행 결과를 보고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사 건</th> <th colspan="3">법원 호 사건</th> </tr> <tr> <th>원 고</th> <th>피 고</th> <th></th> </tr> </thead> <tbody> <tr> <td>진행일자</td> <td></td> <td>다음기일</td> <td></td> </tr> <tr> <td>판결문 수령일자</td> <td></td> <td>상 소 불변기간</td> <td></td> </tr> </tbody> </table> <p>진행내용</p> <p>※불 임 : 관계 입증서류</p>	사 건	법원 호 사건			원 고	피 고		진행일자		다음기일		판결문 수령일자		상 소 불변기간	
사 건		법원 호 사건																													
	원 고	피 고																													
진행일자		다음기일																													
판결문 수령일자		상 소 불변기간																													
사 건	법원 호 사건																														
	원 고	피 고																													
진행일자		다음기일																													
판결문 수령일자		상 소 불변기간																													
<p>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p>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p>																														

현행	개정안
<p>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u>부교육감</u>, <u>교육국장</u>, <u>행정국장</u>, <u>감사관</u></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생략)</p> <p>②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교육국장</u>, <u>행정국장</u>의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 ----- ----- -----.</p> <p>1. <u>부교육감</u>, <u>정책국장</u>----- -----</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정책국장</u>, <u>교육국장</u>----- ----- -----.</p>
<p><b>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b></p> <p>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중 과반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p> <p>1. <u>교육국장</u>, <u>행정국장</u>, <u>민주시민교육과장</u>, <u>초등교육과장</u>, <u>중등</u></p>	<p>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 ----- ----- ----- -----.</p> <p>1. ----- -----</p>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p>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u>정책기획조정관</u>, 창의인재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p> <p>④·⑤ (생략)</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 <u>예산복지과장</u>-----</p> <p>-----</p> <p>-----</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제12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행정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u>노사협력과장</u>이 되며, 위원은 <u>예산담당서기관</u>, 특수교육담당장학관, 학교급식담당사무관, 중등인사담당장학관, 학생배치담당사무관, 학생복지담당사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노무사로 한다.</p> <p>제17조(사무의 위임)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사용기관의 장에게</p>	<p>제1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정책국장</u>-----</p> <p>-----</p> <p>----- <u>예산담당사무관</u>-----</p> <p>-----</p> <p>-----</p> <p>-----</p> <p>-----</p> <p>제17조(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현 행		개 정 안	
<p>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p> <p>1.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u>교무 행정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행정실무원을 제외</u>한 직종의 근로자 채용</p> <p>2. ~ 5. (생략)</p>		<p>-----.</p> <p>1. ----- <u>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전산실무사, 행정실무사, 교무행정실무사(통합)</u>를 -----</p> <p>2. ~ 5. (현행과 같음)</p>	
<p>[별표 2]</p> <p><b>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직종 (제8조 관련)</b></p>		<p>[별표 2]</p> <p><b>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직종 (제8조 관련)</b></p>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	공연장운영 보조요원	20	운전원
2	과학관해설사	21	원어민 코디네이터
3	<u>과학실무원</u>	22	유치원 교육실무원
4	<u>교무행정실무원</u>	23	유치원 방과후과정강 사
5	교육복지사	24	장애교사 보조인력
6	구 육성회직원	25	전문상담사
7	급식배식원	26	<u>전산실무원</u>
8	기업회계직원	27	<u>조리실무원</u>
9	당직전담직원	28	청소원
10	도서관연장 운영인력	29	취업지원관
11	<u>돌봄전담사</u>	30	치료사
12	방과후지원 센터관리자	31	통학차량 실무원
13	사감	32	<u>특수교육 실무원</u>
14	사서 (사서실무원)	33	특수진로 코디네이터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	공연장운영 보조요원	20	운전원
2	과학관해설사	21	원어민 코디네이터
3	<u>과학실무사</u>	22	유치원 교육실무원
4	<u>교무실무사</u>	23	유치원 방과후과정강 사
5	교육복지사	24	장애교사 보조인력
6	구 육성회직원	25	전문상담사
7	급식배식원	26	<u>전산실무사</u>
8	기업회계직원	27	<u>조리실무사</u>
9	당직전담직원	28	청소원
10	도서관연장 운영인력	29	취업지원관
11	<u>초등돌봄전담 사</u>	30	치료사
12	방과후지원 센터관리자	31	통학차량 실무원
13	사감	32	<u>특수교육 실무사</u>
14	사서 (사서실무원)	33	특수진로 코디네이터

현행				개정안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5	시설관리실무원	34	특수학급 종일제강사	15	시설관리실무원	34	특수학급 종일제강사
16	영상실무원	35	평생교육사	16	영상실무원	35	평생교육사
17	영양사	36	학부모상담사	17	영양사	36	학부모상담사
18	영어센터부장	37	향토사	18	영어센터부장	37	향토사
19	운동부지도자	38	<u>행정실무원</u>	19	운동부지도자	38	<u>행정실무사</u>
						39	<u>교무행정실무사 (통합)</u>
<p>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p> <p>제3조(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학교생활교육과장, <u>학교설립기획과장</u>으로 한다.</p> <p>④·⑤ (생략)</p>				<p>제3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학교설립과장</u>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p> <p><u>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u></p> <p>제7조(직인대장의 비치) 본청,</p>				<p><u>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u></p> <p>제7조(직인대장의 비치) -----</p>			

현행	개정안
<p>교육청, 사업소,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대장은 본청 <u>복지재정과</u>에 비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대장은 교육지원청 <u>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u>에 비치한다.</p> <p>④ (생략)</p>	<p>----- ----- ----- ----- <u>교육재정과</u>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b>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b></p> <p>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인 <u>복지재정과장</u>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예산요구서 제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보받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p>	<p>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 ----- <u>교육재정과장</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예산요구서 제출) ① ---- ----- ----- ----- ----- -----</p>

현 행	개 정 안
<p>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u>정책 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은 반드시 <u>복지재정과장</u>과 합의하여야 한다.</p>	<p>----- <u>예산복지과장</u>----- ----- <u>교육재정과장</u>-----.</p>
<p>② (생략)</p> <p>③ <u>복지재정과장</u>은 교육비특별회계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조서(별지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교육재정과장</u>----- ----- -----.</p>
<p>제11조(예산의 사정) ① <u>정책기획조정관</u>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u>행정국장</u>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u>복지재정과장</u>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11조(예산의 사정) ① <u>예산복지과장</u>----- ----- ----- <u>정책국장</u>----- ----- ----- <u>교육재정과장</u>----- -----.</p>
<p>② (생략)</p> <p>제12조(예산안의 작성) ① <u>정책기획조정관</u>은 교육감의 사정을 받은 즉시 예산안을 정리·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예산안의 작성) ① <u>예산복지과장</u>----- ----- -----.</p>
<p>② (생략)</p> <p>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p>

현 행	개 정 안
<p>서 작성) ① <u>정책기획조정관</u>은 예산안이 결정되면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p>	<p>서 작성) ① <u>예산복지과장</u>----- ----- ----- -----.</p>
<p>②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예산안설명서를 작성하여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 ----- <u>예산복지과장</u>----- -----.</p>
<p>③ <u>정책기획조정관</u>은 예산안 설명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p>	<p>③ <u>예산복지과장</u>----- ----- -----.</p>
<p>제15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10조에 준하여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예산안의 수정) ----- ----- ----- ----- ----- ----- ----- ----- ----- ----- <u>예산복지과장</u>----- -----.</p>
<p>제16조(추가경정예산안)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요</p>	<p>제16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 ----- ----- -----</p>

현 행	개 정 안
<p>구서(별지 제11호 서식과 별지 제12호 서식)를 제10조에 준하여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u>정책기획조정관</u>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해당 기관(부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예산 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17조(예산의 이월)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명시이월사업비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요구서와 함께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8조(의결예산의 통지) <u>정책기획조정관</u>은 예산이 의결되면 신</p>	<p>----- ----- - <u>예산복지과장</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예산복지과장</u>----- ----- ----- ----- ----- ----- ----- ----- ----- ----- ----- -----.</p> <p>제17조(예산의 이월) ① ----- ----- ----- ----- ----- ----- ----- ----- <u>예산복지과장</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결예산의 통지) <u>예산복지과장</u>-----</p>

현 행	개 정 안
<p>속히 그 내용을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p>	<p>----- ----- -----.</p>
<p>제20조(세출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8조에 따른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세출예산배정계획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지정된 기일까지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세출예산배정계획) ① -- ----- ----- ----- ----- ----- <u>예산복지</u> <u>과장</u>-----.</p>
<p>② <u>정책기획조정관</u>은 세출예산배정계획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54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조정한 후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u>예산복지과장</u>----- ----- ----- ----- ----- ----- ----- -----.</p>
<p>③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유로 세출예산배정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세출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p>	<p>③ ----- ----- ----- ----- <u>예산</u> <u>복지과장</u>----- -----.</p>



현 행	개 정 안
<p>부터 10일 이내에 계속비사업요구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사고이월사업비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 ----- ----- <u>예산복지과장</u>-----.</p>
<p>② <u>정책기획조정관</u>은 제1항에 따른 계속비사업요구서와 사고이월사업비요구서를 취합·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로써 해당 기관(부서)장 및 본청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p>② <u>예산복지과장</u>----- ----- ----- ----- ----- ----- ----- ----- ----- -----.</p>
<p>제25조(세출예산의 전용 등)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세출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이체)요구서(별지 제23호 서식)를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5조(세출예산의 전용 등) ① ----- ----- ----- ----- ----- ----- ----- ----- ----- ----- <u>예산복지과장</u>----- -----.</p>
<p>② <u>정책기획조정관</u>은 제1항의 세출예산전용(이체)요구서를 심사</p>	<p>② <u>예산복지과장</u>----- -----</p>

현 행	개 정 안
<p>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기관(부서)장 및 본청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p>----- ----- ----- ----- -----</p>
<p>제26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를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6조(예비비의 사용) ① ----- ----- ----- ----- ----- <u>예산복지과장</u>----- -----.</p>
<p>② <u>정책기획조정관</u>은 제1항의 요구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고, 해당 기관(부서)장 및 본청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p>② <u>예산복지과장</u>----- ----- ----- ----- ----- ----- -----.</p>
<p>③ (생략) 제27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과 시의회 제출)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26조에 따라 예비비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과 시의회 제출) ① ----- ----- ----- ----- ----- <u>예산복지과장</u>----- -----.</p>
<p>② <u>복지재정과장</u>은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p>	<p>② <u>교육재정과장</u>----- -----</p>

현 행	개 정 안
<p>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세입·세출결산서 심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 -----.</p>
<p>제28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즉시 그 사유를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8조(실행예산) ① ----- ----- ----- ----- ----- <u>예산</u> <u>복지과장</u>-----.</p>
<p>② <u>정책기획조정관</u>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실정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p>	<p>② <u>예산복지과장</u>----- ----- ----- ----- -----.</p>
<p>③ <u>정책기획조정관</u>은 실행예산이 결정되면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p>	<p>③ <u>예산복지과장</u>----- ----- ----- -----.</p>
<p>제54조(월별자금배정계획서의 작성) ① 예산이 성립되면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20조의 세출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와 세출예산월별(분기별)집행계획서(별지 제41호 서식)를 <u>복지재정과</u></p>	<p>제54조(월별자금배정계획서의 작성) ① ----- ----- ----- ----- ----- ----- ----- ----- ----- <u>교육재정과</u></p>

현 행	개 정 안
<p><u>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복지재정과장</u>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 조정 후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u>정책기획조정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5조(지출한도액의 통지와 자금배정) 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출원은 <u>복지재정과장</u>에게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u>복지재정과장</u>은 지출원별로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로 지출한도액 배정을 통지하고, 금고에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지시하여야 한다.</p> <p>② <u>복지재정과장</u>은 필요한 경우 자금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기배정한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63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생략)</p> <p>② 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는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p>	<p><u>장</u>-----.</p> <p>② <u>교육재정과장</u>-----</p> <p>-----</p> <p>-----</p> <p><u>예산복지과장</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5조(지출한도액의 통지와 자금배정) ① -----</p> <p>----- <u>교육재정과장</u>-----</p> <p>-----</p> <p>- <u>교육재정과장</u>-----</p> <p>-----</p> <p>-----</p> <p>-----.</p> <p>② <u>교육재정과장</u>-----</p> <p>-----</p> <p>-----</p> <p>-----.</p> <p>제63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현행	개정안
<p>1. 제5조에 따라 <u>복지재정과장</u>인 분임재무관에게 위임된 사항 외의 예산집행은 <u>정책기획조정관</u>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p> <p>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은 <u>행정국장</u> 및 <u>정책기획조정관</u>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가. ~ 차. (생략)</p>	<p>1. ----- <u>교육재정과장</u>----- ----- ----- <u>예산복지과장</u>-----.</p> <p>2. ----- - <u>정책국장</u> 및 <u>예산복지과장</u>----- ----- 가. ~ 차. (현행과 같음)</p>
<p>제6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 본청은 <u>복지재정과장</u>에게, 교육지원청은 해당 <u>복지재정과장</u>(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에게, 관서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경우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6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 ----- ----- <u>교육재정과장</u>에게-----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7조(일상경비 및 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 ① 본청 각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u>복지재정과장</u>,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은 해당 <u>복지재정과장</u></p>	<p>제77조(일상경비 및 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 ① ----- ----- <u>교육재정과장</u>, ----- -----</p>



현행	개정안
<p>원청의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u>복지재정과장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p>	<p>----- ----- ---- <u>교육재정과장에게</u> ---- -----.</p>
<p>제13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u>복지재정과장이</u>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이 수행한다.</p> <p>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u>복지재정과장이</u>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이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u>교육재정과장이</u> ----- ----- -----.</p> <p>② ----- ----- <u>교육재정과장이</u> ---- ----- ----- ----- ----- ----- ----- ----- -----.</p>
<p>제13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품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검수·검사조서(별지 제74호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하고 본청은 <u>복지재정과</u>, 교육지원청은 각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p>	<p>제13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 ----- ----- ----- ----- -- <u>교육재정과</u>, ----- -----</p>

현	행	개	정	안																																
<p>은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단, 시설공사에 사용 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 입회 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 ④ (생 략)</p> <p>제143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에 속하는 세출의 지 출계산서(별지 제8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29조에 따른 금고 의 세출월계표(별지 제69호 서 식)를 붙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u>복지재정과장</u>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② <u>복지재정과장</u>은 제1항의 지출 계산서를 모아서 검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3조(지출계산서) ① ----- ----- ----- ----- ----- ----- ----- <u>교육재정과장</u> ----- -----.</p> <p>② <u>교육재정과장</u>----- ----- ----- -----.</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기관의 명명</th> <th style="width: 10%;">회계직의 지위</th> <th style="width: 10%;">회 계 직 명</th> <th style="width: 70%;">지 정 관 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본 청</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총괄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회계 책임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징수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무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채권 관리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채 관리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장</td> </tr> </tbody> </table>		기관의 명명	회계직의 지위	회 계 직 명	지 정 관 직	본 청	총괄직	회계 책임관	행정국장	징수관	행정국장	재무관	행정국장	채권 관리관	행정국장	부채 관리관	행정국장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기관의 명명</th> <th style="width: 10%;">회계직의 지위</th> <th style="width: 10%;">회 계 직 명</th> <th style="width: 70%;">지 정 관 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본 청</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총괄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회계 책임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징수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무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채권 관리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채 관리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장</td> </tr> </tbody> </table>			기관의 명명	회계직의 지위	회 계 직 명	지 정 관 직	본 청	총괄직	회계 책임관	행정국장	징수관	행정국장	재무관	행정국장	채권 관리관	행정국장	부채 관리관	행정국장
기관의 명명	회계직의 지위	회 계 직 명	지 정 관 직																																	
본 청	총괄직	회계 책임관	행정국장																																	
		징수관	행정국장																																	
		재무관	행정국장																																	
		채권 관리관	행정국장																																	
		부채 관리관	행정국장																																	
기관의 명명	회계직의 지위	회 계 직 명	지 정 관 직																																	
본 청	총괄직	회계 책임관	행정국장																																	
		징수관	행정국장																																	
		재무관	행정국장																																	
		채권 관리관	행정국장																																	
		부채 관리관	행정국장																																	

현행				개정안			
	분임직	통합지출관 지출원	<b>복지재정과장</b>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분임직	통합지출관 지출원	<b>교육재정과장</b>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b>복지재정과장</b> <b>복지재정과장</b> , 각과장·담당관(일상경비에 한함)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b>교육재정과장</b> <b>교육재정과장</b> , 각과장·담당관(일상경비에 한함)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사무관 각과·담당관의경리업무담당사무관( <b>복지재정과</b> 는 제외),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장학관 <b>복지재정과</b> 의 세입·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사무관 각과·담당관의경리업무담당사무관( <b>교육재정과</b> 는 제외),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장학관 <b>교육재정과</b> 의 세입·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주임직	징수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교육지원청	주임직	징수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재무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재무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부채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부채관리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지출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지출업무담당주사(팀장)			지출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지출업무담당주사(팀장)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각과장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복지재정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각과장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세입업무담당주사(팀장) 각과의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팀장, 지출원을 둔과는 제외)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세입·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세입업무담당주사(팀장) 각과의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팀장, 지출원을 둔과는 제외) 복지재정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세입·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현행				개정안			
관서 (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직	분임 징수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분임직	분임 징수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분임직	분임 재무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분임직	분임 재무관	관서의 장. 단, 총무부장의 직급이 서기관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장	
주임직	수출납원	금입 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담당	수출납원	금입 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담당	
	일상 경비 출납원		관서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일상 경비 출납원		관서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학교 회계 출납원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회계 출납원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세입· 세출외 현금 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세입· 세출외 현금 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업무담당자	
<b>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b>							
[별표] <b>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 지정</b>				[별표] <b>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 지정</b>			
기관 명칭	회계직명	지 정 관 직		기관 명칭	회계직명	지 정 관 직	
본청	총괄 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본청	총괄 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분임물품관리관	○ <b>복지재정과장</b> (행정국장의 권한 을 분임) ○ 각 과장·담당관			분임물품관리관	○ <b>교육재정과장</b> (행정국장의 권한 을 분임) ○ 각 과장·담당관	
	물품출납공무원	<b>복지재정과</b> 물품업 무 담당 사무관			물품출납공무원	<b>교육재정과</b> 물품업 무 담당 사무관	
	분임물품출납 공무원	각 과 물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분임물품출납 공무원	각 과 물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교육	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국장		교육	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국장	

현행			개정안		
지원청		○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 복지재정과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장의 권한을 분임) ○ 각 과장	지원청		○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 복지재정과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장의 권한을 분임) ○ 각 과장
	분임물품관리관	○ 복지재정과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 ○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		분임물품관리관	○ 복지재정과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 ○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과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장학사)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과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장학사)
관서	물품관리관	관서의 장	관서	물품관리관	관서의 장
	물품출납공무원	○ 학교 : 행정실장(교육행정직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 학교 외 관서 : 물품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물품출납공무원	○ 학교 : 행정실장(교육행정직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자) ○ 학교 외 관서 : 물품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
<p><b>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b></p> <p>제3조(구성) ①·② (생략)</p> <p>③위원은 내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u>초등교육과장</u>,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u>예산담당서기관</u>, 복지재정과장, 남부교육지</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예산복지과장</u>, <u>초등교육과장</u>----- ----- <u>교육재정과장</u>-----</p>		

현행	개정안
<p>원청 교육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9조(실무협의회) ① (생략)</p> <p>②실무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복지재정과장을</u>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u>예산복지과장</u>-----</p> <p>-----</p> <p>-----</p> <p>-----.</p>

## 훈 령

## 2019.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

### 1. 제정이유

2019년 3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2. 제정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042호,2018.12.31.,]

2019. 3. 1.자 본청 조직개편 계획안 [노사협력과-1340호(2018.11.01.)]

2019. 3. 1.자 본청 조직개편 변경안 [노사협력과-1718호(2018.11.21.)]

###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훈령 추진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을 변경함(안 제2조 ~ 안 제7조)

4. 일괄개정훈령(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발령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2019.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50호

## 2019.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

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육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3조(「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감사관, 정책기획조정관,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로 한다.

### 제4조(「인천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총무과장, 노사협력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 제5조(「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으로, “행정관리과장”을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학교설립기획과장”을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지원”을 각각 “총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보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인천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p> <p>제5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u>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을</u>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u>---</p> <p>③ (현행과 같음)</p>
<p>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에서 정한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본청 위원회의 <u>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감사관, 정책기획조정관,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u></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p> <p>-----</p> <p>-----</p> <p>-----</p> <p>----- <u>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u></p>



현행	개정안
<p>장으로 하며, 감사관, <u>정책기획조정관</u>, <u>총무과장</u>, <u>노사협력과장</u>, <u>정보지원과장</u>을 위원으로 한다.</p> <p>2. 3. (생략)</p> <p>② (생략)</p>	<p>----- <u>안전총괄과장</u>, <u>초등교육과장</u>, <u>총무과장</u>-----</p> <p>-----.</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b></p> <p>제14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u>교육국장</u>, <u>행정국장</u>, <u>감사관</u>, <u>총무과장</u>, <u>행정관리과장</u>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해당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p> <p>④ ~ ⑧ (생략)</p>	<p>제14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정책국장</u>, <u>교육국장</u>----- <u>학교설립과장</u>-----</p> <p>-----.</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b>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b></p> <p>제2조(구성)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p>	<p>제2조(구성) -----</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위원 중 5명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u>학교설립기획과장</u>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3. (생략)</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학교설립과장</u> -----</p> <p>-----.</p> <p>3. (현행과 같음)</p>
<p><b>인천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b></p> <p>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u>정보지원과</u>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u>정보지원과장</u>이 되며, 교육지원청 기록관은 <u>학교운영지원과</u>(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u>학교운영지원과장</u>(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p> <p>②·③ (생략)</p> <p>제12조(구성 및 수당 등) ① (생략)</p>	<p>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p> <p>----- <u>총무</u> -----</p> <p>----- <u>총무</u> -----</p> <p>-----</p> <p>-----</p> <p>-----</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구성 및 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p>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 1. 개정이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에서 수행하는 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승진 임용자도 소속기관에서 계속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연속성 및 예측 가능성과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 개정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 3. 주요내용

가. 기관 간 전보 삭제(안 제3조제4항제1호)

-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 임용자에 대한 기관 간 전보 조항 삭제(다목)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에 의거 개정 규정의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하되 5급 승진 임용자에 대한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둠(부칙)

### 4. 일부개정훈령안 : 붙임

###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발 령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51호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급 승진 임용자에 대해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전보) ① ~ ③ (생략)</p> <p>④ 전보 시 직렬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다.</p> <p><u>1. 기관 간 전보</u></p> <p>가. 삭제</p> <p>나. 삭제</p> <p><u>다.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 임용자</u></p> <p>2. (생략)</p> <p>⑤·⑥ (생략)</p>	<p>제3조(전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u>&lt;삭제&gt;</u></p> <p>2.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1호

**I-Food Park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I-Food Park 관리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18.

**인천광역시장**

**I-Food Park 관리기본계획(변경)**

**1. 산업단지 개요**

- 명 칭 : I-Food Park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
- 면 적 : 261,700m<sup>2</sup>
- 시 행 자 : 인천식품단지개발주식회사
- 시행기간 : 2017. 7. ~ 2019. 12. 31.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2. 조성목적**

- 인천시 관내 산재되어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집단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 제조공정의 HACCP인증으로 식품안정성 확보
- 유통시스템의 혁신과 집적 이익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모

**3. 추진경위**

- 2015.04.01 : 식품단지 조성건의 (인천 식품재료가공업 연합회)
- 2015.12.24 : 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 제출
- 2016.02.19 : 사업시행 법인(SPC) 설립(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  
(사)인천식품제조가공업협의회+(주)국원토건+(주)용호건설+(주)장원)

- 2016.03.25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최(국토교통부)
- 2016.04.11 :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고시(제2016-65호)
- 2017.06.05 :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7-132호)
- 2018.07.16 :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8-170호)
- 2017.08.07 : I-Food Park 관리기본계획 고시(제2017-183호)
- 2018.11.19 :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제2018-276호)
- 2018.12.03 :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제2018-302호)
- 2019.01.21 :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제2019-14호)

#### 4. 관리방향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집산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산업단지 조성
-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업종배치로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 공공 및 자원시설용지의 적정배치로 생산활동 지원 및 이용편의 도모
- 근로자 복지향상과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 전개

#### 5.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자격

##### 가. 입주대상업종

##### 1) 산업시설구역

- 식료품 제조업(C10)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 도축업(C1011), 곡물 도정업(C106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C1080), 위험 물품 보관업(H52104)의 업종은 제한함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 ※ 허용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위해도 지수(1)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

## 나. 입주기업체 자격

### 1) 산업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8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3) 공공시설구역

- 법 시행령 제4조의5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운영자

### 4) 공통사항

-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 6.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

### 가. 용도별 구역면적

합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공원·녹지구역
261,700㎡	158,993㎡	12,459㎡	70,452㎡	19,796㎡

※ 공공시설 : 하천 11,020㎡, 저류시설 4,466㎡, 폐수처리시설 3,500㎡,  
주차장 1,747㎡, 도로 48,846㎡, 보행자도로 632㎡, 공공공지 241㎡

###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1) 산업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2)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 법 제2조 제17호 및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3) 공공시설구역
  - 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한 공공시설(공원, 도로, 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 4) 공원·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5) 공통사항
  - 산업단지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시한 개발방향, 토지이용계획, 획지계획, 경관계획을 적용하여 주변지역과 특화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

다. 용도별 구역도 : 붙임 「I-Food Park 토지이용계획도」 참조

## 7.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 가. 배치면적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계	158,993	100.0
식료품 제조업(C10)	152,282	95.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6,711	4.2

나. 건축계획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 다. 배치기준

- 1)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집단화로 생산성 향상 도모
- 2)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계획에 등에 적합하도록 업종 규모에 맞게 계획
- 3) 주변지역의 환경 및 산업단지 내 근무자의 생활환경 측면을 고려
- 4) 기업과 소비자 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공정 견학 및 제조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개방된 형태의 공장 운영

라.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I-Food Park 업종배치계획도」 참조

## 8. 지원시설 설치·운영

가. 설치계획 : 입주대상 업종 참조

나. 건축계획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단,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18-170호에 따른 위치 지원5 및 폐수1은 용적률 350% 이하, 주차장은 용적률 900% 이하임.)

다. 관리운영

- 1) 법 제2조 제17호 및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2) 입주기업체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시설에 우선함
- 3) 산업단지 및 종사자와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판매, 회의·교육, 시험·검사(R&D), 바이어 상담, 물류 등 다양한 지원시설 운영
- 4) 지원시설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용도의 특정업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입주계약변경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9.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지여건

구분	주요내용	관리기관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도로(광로3-24호선)에서 진입도로계획(6차로)</li> <li>◦ 북측도로(소로1-2호선)에서 부진입도로계획(3차로)</li> </ul>	인천광역시청 서구청											
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송·배수관에서 분기 용수공급</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1일 최대수요량 (m<sup>3</sup>/일)</th> <th rowspan="2">공급량 (m<sup>3</sup>/일)</th> </tr> <tr> <th>공업</th> <th>생활</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1,698</td> <td>103</td> <td>1,801</td> <td>1,801</td> </tr> </tbody> </table>	1일 최대수요량 (m <sup>3</sup> /일)			공급량 (m <sup>3</sup> /일)	공업	생활	합계	1,698	103	1,801	1,801	상수도 사업본부
1일 최대수요량 (m <sup>3</sup> /일)			공급량 (m <sup>3</sup> /일)										
공업	생활	합계											
1,698	103	1,801	1,801										
오·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정화 후 방류</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1일 최대발생량 (m<sup>3</sup>/일)</th> <th rowspan="2">시설용량 (m<sup>3</sup>/일)</th> </tr> <tr> <th>오수</th> <th>폐수</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93</td> <td>1,035</td> <td>1,128</td> <td>1,300</td> </tr> </tbody> </table>	1일 최대발생량 (m <sup>3</sup> /일)			시설용량 (m <sup>3</sup> /일)	오수	폐수	합계	93	1,035	1,128	1,300	
1일 최대발생량 (m <sup>3</sup> /일)			시설용량 (m <sup>3</sup> /일)										
오수	폐수	합계											
93	1,035	1,128	1,300										

구분	주요내용			관리기관
전력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한국전력공사
	구분	연간전력수용량(Mwh/년)	수요부하(kVA)	
	산업시설용지	71,413	7,950	
	지원·공공시설용지	9,412	2,466	
합계	80,825	10,416		
열(LNG)	◦ 인천도시가스(주)에서 공급			인천도시가스(주)
	구분	열수요량(Gcal/년)	비고	
	산업시설용지	179,587		
	지원·공공시설용지	4,633		
합계	184,220			

#### 나. 분양공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구역, 주차장 분양공고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준용

#### 다. 분양현황

구분	총면적	분양대상면적	입주계획	비고
산업시설구역	158,993m <sup>2</sup>	158,993m <sup>2</sup>	78개사	
지원시설구역	12,459m <sup>2</sup>	12,459m <sup>2</sup>	6개사	
공공시설구역	90,248m <sup>2</sup>	1,747m <sup>2</sup>	1개사	주차장
합계	261,700m <sup>2</sup>	173,199m <sup>2</sup>	86개사	

#### 라. 입주 우선순위

-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의함
- 2) 지원시설구역 및 주차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의함

## 마. 사후관리계획

### 1) 분양용지관리

-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000㎡이상으로 함.
- 법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6개월간의 시정명령을 거쳐 환수할 수 있음.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 등 분양용지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 본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서에 의함.

### 2) 환경관리

-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I-Food Park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서(관련부서 협의의견)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 환경오염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저감·방지시설 설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함
- 지정 폐기물은 전문처리 업체를 통하여 전량 위탁 처리
- 산업단지 내 공원과 차단녹지를 설치하여 소음 등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인접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운영기준을 준수

### 3) 하천관리

- 산업단지 내 하천의 정비·관리는 「하천기본계획(경기도 고시)」을 근거로 시행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되는 방류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3. 수질 및 수생태계-가. 하천-2)생활환경기준 ‘보통등급’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 방류

## 4) 공공폐수처리시설

-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전에 지정·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준수
- 고농도 식품폐수 유입 대비 유지관리 용이, 운영·관리에 따른 입주업체 비용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한 적정 시설·설비 구축
- 공공폐수처리 후 최종 방류수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므로 3)하천관리에서 제시한 ‘보통등급(수질 및 수생태계)’을 충족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 식품 제조업의 경우 고농도 유입 및 일정시간대(청소시간)의 폐수 대량 발생, 유량변동 폭 증가, 체류시간 부족 등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완충저류조 설치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입주업체) 부담으로 관리·운영되며, 비용 부과방식은 업체별 오염부하량(농도·유량)에 따라 개별 부과함

## 5) 안전관리(변경 없음)

- 필요시 법 제45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실시
- 입주업체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위험시설을 사용·설치할 때에는 관계 법령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관할 파출소, 소방서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발생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 6) 기반시설 지원(변경 없음)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LNG,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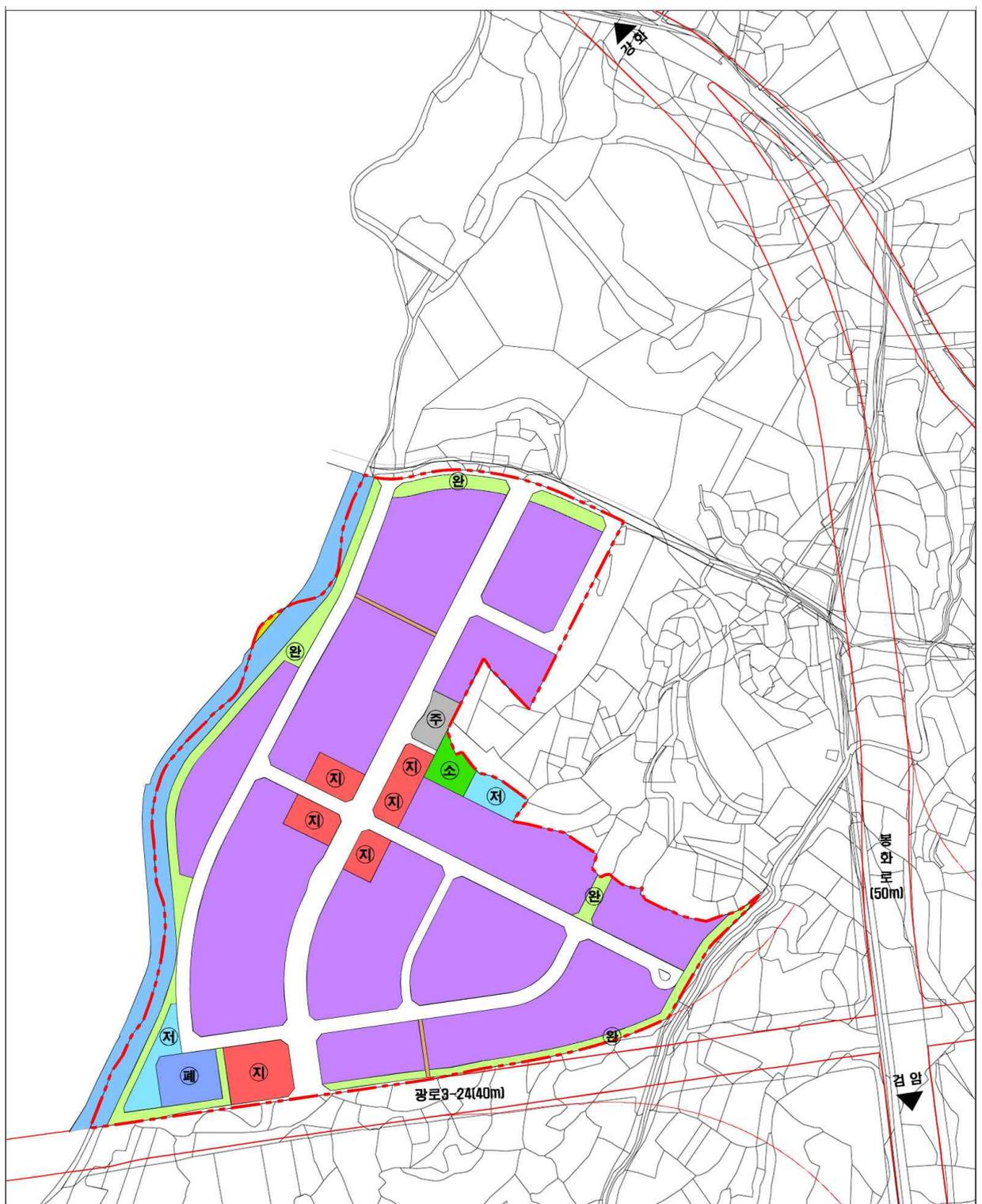
## 7) 입주기업 지원(변경 없음)

- 신속한 민원 처리(입주계약, 공장설립 등)
- 경영 및 생산활동 지원(시책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 바.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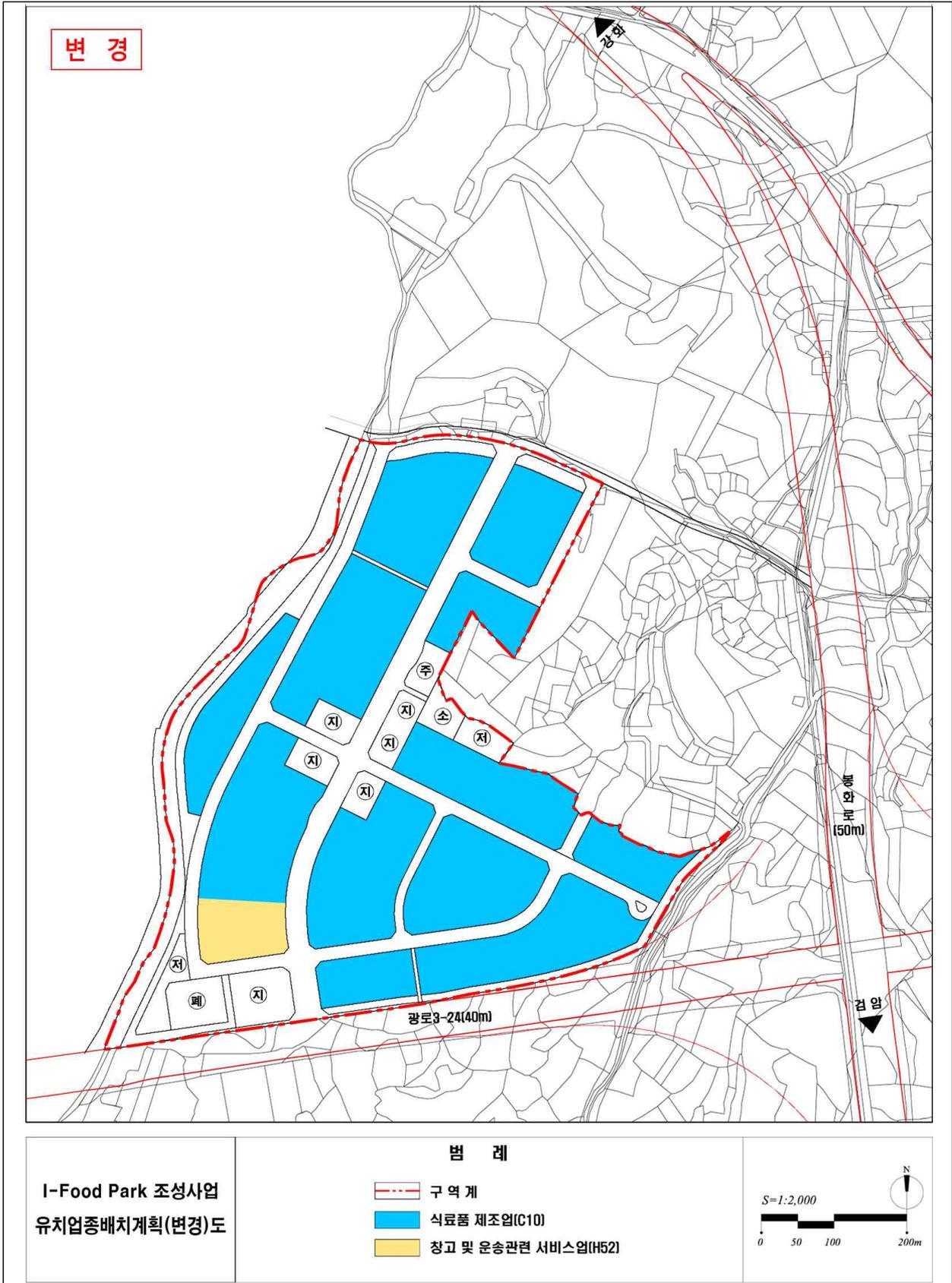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른다.

붙임 1. 토지이용계획도



범례	
I - Food Park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border-bottom: 1px dashed red; width: 20px; display: inline-block;"></span> 구역계</li> <li><span style="background-color: purple; width: 20px;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span> 산업시설</li> <li><span style="background-color: red; width: 20px;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span> 지원시설</li> </ul> </div> <div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background-color: gray; width: 20px;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span> 주차시설</li> <li><span style="background-color: green; width: 20px;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span> 소공원</li> <li><span style="background-color: lightgreen; width: 20px;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span> 완충녹지</li> </ul> </div> <div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background-color: yellow; width: 20px;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span> 공공공지</li> <li><span style="background-color: lightblue; width: 20px;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span> 하천</li> <li><span style="background-color: cyan; width: 20px;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span> 저류지</li> </ul> </div> <div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background-color: blue; width: 20px;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span> 폐수처리시설</li> <li><span style="border-bottom: 1px solid gray; width: 20px; display: inline-block;"></span> 도로</li> <li><span style="background-color: brown; width: 20px;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span> 보행자전용도로</li> </ul>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20px;"> <p>S=1:2,000</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div>

붙임 2. 업종배치계획도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2호

##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 사업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최초) 인가하고 같은법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녹지과 ☎032-440-3653),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공원녹지과 ☎032-749-8722~ 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2. 25.

###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6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 2) 명 칭 :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인 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장미 근린공원 3단계	공원	102,443	70,153	32,290	-	1944.01.08. (고시 제3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 1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1. 12.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 성명 · 주소

- 따로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따로붙임

## 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 및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비대상 필지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후 사용 또는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7.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8.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 토지조서 (총괄)

구분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계	19필지			56,776	32,290							
1	연수구 연수동	136	답	654	654	장00	남구 송의동					
2	연수구 연수동	136-1	답	311	311	이00	인천시 남구 도화동					
3	연수구 연수동	136-2	전	95	95	권00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4	연수구 연수동	136-6	임	1,243	1,243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	연수구 연수동	136-7	전	919	919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	연수구 연수동	137-2	임	364	364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7/26				
						우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26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26				
						우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26				
7	연수구 연수동	137-16	대	314	314	재단법인기0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구분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8	연수구 연수동	138-1	답	22	22	장00	인천 남구 석정로					
9	연수구 연수동	471-2	도	36	36	인천광역시 연수구						
10	연수구 연수동	471-3	잡	2,727	2,727	인천광역시						
11	연수구 연수동	471-4	도	363	363	인천광역시 연수구						
12	연수구 연수동	471-5	잡	3,474	2,106	인천광역시						
13	연수구 연수동	640-15	도	1,339	236	인천광역시 연수구						
14	연수구 연수동	산60	임	8,330	2,383	박00	인천 연수구 동춘동					
15	연수구 연수동	산61-19	임	9,521	9,521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6	연수구 연수동	산62	임	2,757	2,757	인천광역시		500/2757				
						박00	인천 동구 송현동	878.5/2757				
						인천광역시		500/2757				
						박00	인천 주안동	878.5/2757				
17	연수구 연수동	산64-2	임	5,256	5,256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 물 건 조 서 (총괄)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연수동	136-1	소나무-1, 벚나무-2, 뽕나무-3, 살구나무-1 감나무-2, 매실나무-1					주	이00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						
2	1	연수동	136-2	창고	목재/샌드 위치판넬	3.0*3.0, H3.0	-	9.00	m <sup>2</sup>	권00	인천광역시	1/1						
	2	연수동	136-2	울타리	목재/샌드 위치판넬	웬스 (H=1.3), L=14.2M	-	-	-									
	3	연수동	136-2	울타리	철망웬스	웬스 (H=1.6), L=17.6M	-	-	-									
3	4	연수동	136-6	창고	목조	CAD 구적	-	10.89	m <sup>2</sup>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						
		연수동	136-6	보도포 장	보도블럭	-	-	9.27	m <sup>2</sup>									
		연수동	136-6	호두나무-1, 매실나무-3, 소나무-1, 감나무-2, 배나무-2					주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4	5	연수동	136-7	창고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15*5.1, H2.8	-	76.50	m <sup>2</sup>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				
	6	연수동	136-7	기타 (게이트)	철재	W.6*H2.0, 1EA	-	-	-							
	7	연수동	136-7	울타리	목재/ 그물망	웬스 (H=1.0), L=2.6M	-	-	-							
		연수동	136-7	사과나무-3, 앵두나무-1, 살구나무-2, 소나무-2 포도-8, 매실나무-1					주							
5	8	연수동	137-16	주거지	세멘블럭조	$((8.3+6.4)*2.9/2)$ +(12.5*8.3), H2.5	172.78	125.07	m <sup>2</sup>	만000	연수동	1/1				
	9	연수동	137-16	교육실	세멘블럭조	6.7*6.8, H2.5		45.56	m <sup>2</sup>							
	10	연수동	137-16	창고	샌드위치 판넬 /PE골판지	$(2.6*2.7)+(3.1*4.3)$ ,H2.2	-	20.35	m <sup>2</sup>							
	11	연수동	137-16	차양	PE골판지 /철재	1.5*2.4	-	3.60	m <sup>2</sup>							
	12	연수동	137-16	옹벽	콘크리트	W0.4 H=0.8, L=9.8M	-	3.92	m <sup>2</sup>							
	13	연수동	137-16	차양	PE골판지/ 목재	CAD 구적	-	16.20	m <sup>2</sup>							
		연수동	137-16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51.52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14	연수동	산61-19	게이트	콘트리트/ 철재	W0.4*L4.0,H5.6	-	-	-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15	연수동	산61-19	화장실	목재/슬레 이트	1.9*6.3, H2.3	-	11.97	m <sup>2</sup>							
	16	연수동	산61-19	창고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2.6*4.6, H3.1	-	11.96	m <sup>2</sup>							
	17	연수동	산61-19	창고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4.0*4.4, H1.7	-	17.60	m <sup>2</sup>							
	18	연수동	산61-19	예배당	벽돌	CAD 구적	-	575.30	m <sup>2</sup>							
	19	연수동	산61-19	비가림 차양	파이프,비 닐/슬레이 트	2.8*3.0, H2.3	-	8.40	m <sup>2</sup>							
	20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콘크리트	W0.5*L3.6, H0.5	-	1.80	m <sup>2</sup>							
	21	연수동	산61-19	계단 (교회주 진입)	콘크리트	4.5*9.7, H0.2	-	43.65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22	연수동	산61-19	계단 난간 기둥	콘크리트	0.35*0.35, H0.5(6EA)	-	0.74	m <sup>2</sup>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23	연수동	산61-19	계단 난간	철재	봉 Φ0.05, L9.7, H0.9	-	-	-							
	24	연수동	산61-19	계단 난간	철재	봉 Φ0.05, L9.7, H0.5	-	-	-							
	25	연수동	산61-19	전기둥	철재	Φ0.05, H3.1(2EA)	-	-	-							
	26	연수동	산61-19	십자가 받침대	콘크리트	1.7*1.7, H0.3	-	2.89	m <sup>2</sup>							
	27	연수동	산61-19	십자가	철재	0.3*0.4, H16.0	-	0.12	-							
	28	연수동	산61-19	십자가 바닥구 조물	벽돌쌓기, CON'C 포장	(4.4*2.1)-(1.7*1. 7), L5.9	-	6.35	m <sup>2</sup>							
	29	연수동	산61-19	창고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3.0*4.6, H2.2	-	13.80	m <sup>2</sup>							
	30	연수동	산61-19	경사로 난간	스틸	봉 Φ0.05, L22.0, H0.85	-	-	-							
	31	연수동	산61-19	볼라드	석재	0.3*0.6, H0.15(2EA)	-	0.36	m <sup>2</sup>							
	32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철재	W0.2*L4.8, H0.5	-	0.96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33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철재	W0.2*L3.25, H0.5	-	0.65	m <sup>2</sup>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34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W0.25*L3.6, H0.55	-	0.90	m <sup>2</sup>							
	35	연수동	산61-19	평상	목재	2.45*3.0, H0.25	-	1.35	m <sup>2</sup>							
	36	연수동	산61-19	돌평상	석재	1.5*1.5, H0.4	-	2.25	m <sup>2</sup>							
	37	연수동	산61-19	원형평 상	목재	D1.4, H0.45	-	1.54	m <sup>2</sup>							
	38	연수동	산61-19	농구대	철재	H4.0(2EA)	-	-	-							
	39	연수동	산61-19	족구 지주대	철재	Φ0.1, H2.4	-	-	-							
	40	연수동	산61-19	창고 (비닐 하우스)	철재/목재/ 천막	8.3*6.0, H3.3	-	49.80	m <sup>2</sup>							
	41	연수동	산61-19	부속 건물	세멘블럭조 /슬레이트	2.9*1.2 , H2.0	-	3.48	m <sup>2</sup>							
42	연수동	산61-19	건물 (교육 실)	콘크리트/ 슬레이트	7.9*14.1, H1.2~2.5	-	111.39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43	연수동	산61-19	파고라	철재	3.0*6.5, H2.5	-	19.50	m <sup>2</sup>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44	연수동	산61-19	원형 의자	목재	10EA	-	-	-									
	45	연수동	산61-19	평상	철재/목재 /PE골판지	2.5*5.0, H2.8	-	12.50	m <sup>2</sup>									
	46	연수동	산61-19	식당	샌드위치판 넬/판넬	CAD구적	-	166.07	m <sup>2</sup>									
	47	연수동	산61-19	화장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2.9*4.3, H2.2	-	12.47	m <sup>2</sup>									
	48	연수동	산61-19	배수로 (수로, 우수관)	석축, PE관	W0.6, L=16.4m(관 Ø400)	-	9.84	m <sup>2</sup>									
	49	연수동	산61-19	차양	PE골판지	2.4*7.0, H2.2	-	16.80	m <sup>2</sup>									
	50	연수동	산61-19	화장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1.8*2.3, H2.2	-	4.14	m <sup>2</sup>									
	51	연수동	산61-19	화장실	콘크리트 /PE골판지 /슬레이트	2.2*3.8, H2.2	-	8.36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52	연수동	산61-19	담장	철재웬스	웬스 (H=1.9), L=4.5m	-	-	-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53	연수동	산61-19	담장	철재웬스	웬스 (H=1.2), L=41.9m	-	-	-							
	54	연수동	산61-19	게이트 (아치 형)	철재	2.0*0.5, H2.5	-	1.00	m <sup>2</sup>							
	55	연수동	산61-19	난간	ST	H0.55, L=6.7m	-	-	-							
	56	연수동	산61-19	계단	콘크리트	1.3*6.6*13단	-	8.58	m <sup>2</sup>							
	57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천막/ 슬레이트	5.5*3.4, H2.5	-	18.70	m <sup>2</sup>							
	58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슬레 이트	2.6*8.5, H2.2	-	22.10	m <sup>2</sup>							
	59	연수동	산61-19	창고	콘크리트/ 슬레이트	5.3*3.4, H2.1	-	18.02	m <sup>2</sup>							
	60	연수동	산61-19	건물(교 육실)	콘크리트/ 슬레이트	(5.9*7.4)+(4.6*2 5.5), H2.5	-	160.96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61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 /PE골판지	0.9*1.7, H2.3	-	1.53	m <sup>2</sup>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62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 슬레이트	2.7*3.8, H2.5	-	10.26	m <sup>2</sup>							
	63	연수동	산61-19	창고 (비닐 하우스)	철재/목재/ 천막	11.5*7.0, H3.8	-	80.50	m <sup>2</sup>							
		연수동	산61-19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84.87	m <sup>2</sup>							
		연수동	산61-19	바닥 포장	블록포장	CAD 구적	-	879.50	m <sup>2</sup>							
		연수동	산61-19	바닥 포장	화강석판석 포장	CAD 구적	-	10.97	m <sup>2</sup>							
	연수동	산61-19	은행나무-4, 잣나무-66, 오동나무-5, 호두나무-2, 살구나무-5, 매실나무-2, 고욤나무-5, 벗나무-35, 라일락-6, 향나무-22, 앵두나무-10, 사철나무-22 진달래-1, 회양목-143, 철죽-1,539, 눈향나무-21, 주목-24, 동백나무-7, 측백나무-48, 쥐똥나무-1, 눈주목-1, 단풍나무-34, 보리수나무-5, 조팝나무-2 비자나무-19, 깨암나무-2, 장미-15, 가문비나무-1, 꽃사과나무-4, 대추나무-9, 목련-1, 참나무-1, 매화나무-4, 무궁화-10, 뽕나무-5, 감나무-11, 박테기나무-1, 메타세콰이어-15, 명자나무-5, 중국단풍-12, 참느릅나무-4, 사과나무-1, 배롱나무-2, 산수유나무-1, 능소화-1, 등나무-3, 복숭아나무-1, 모과나무-1, 느티나무-4, 소나무-3, 밤나무-3, 아카시아-1,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7	64	연수동	산62	화장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3.16*3.45, H2.0	-	10.90	m <sup>2</sup>	대0000	연수구 연수동	1/1				
	65	연수동	산62	주거지	샌드위치판 넬/판넬	4.7*9.7, H2.3 -(3번보일러실)	-	39.73	m <sup>2</sup>							
	66	연수동	산62	보일러 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1.5*1.7, H2.3	-	5.87	m <sup>2</sup>							
	67	연수동	산62	부속 예배당	샌드위치 판넬/판넬	6.6*8.4, H2.3	-	55.44	m <sup>2</sup>							
	68	연수동	산62	연결 건물	목재	2.4*1.0, H2.3	-	2.40	m <sup>2</sup>							
	69	연수동	산62	화장실+ 보일러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3.93*3.9, H2.3	-	15.33	m <sup>2</sup>							
	70	연수동	산62	창고	샌드위치 판넬/천막	8.06*5.64, H2.2	-	45.46	m <sup>2</sup>							
	71	연수동	산62	교회 예배당	샌드위치판 넬/천막	7.2*10.95, H2.3	-	78.84	m <sup>2</sup>							
	72	연수동	산62	창고	목재	2.0*1.0, H0.8	-	2.00	m <sup>2</sup>							
	73	연수동	산62	보일러 실	목재,벽돌/ 천막	1.25*1.76, H2.3	-	2.20	m <sup>2</sup>							
	74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철골재, 천막	9.3*6.0+2.1*3.9, H2.3	-	63.99	m <sup>2</sup>							
	75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컨테이너	5.63*3.0, H2.3	-	16.89	m <sup>2</sup>							
	76	연수동	산62	실외보 일러실	목재/샌드 위치판넬	2.1*1.5, H2.3	-	3.15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7	77	연수동	산62	담장	샌드위치 판넬	담장 (H=1.5), L=7.1M	-	-	-	대0000	연수구 연수동	1/1				
	78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샌드위치 판넬/천막	8.53*6.0, H2.3	-	51.18	m <sup>2</sup>							
	79	연수동	산62	출입문	샌드위치 판넬	문 (H=1.6), L=4.0M	-	-	-							
	80	연수동	산62	담장	메쉬웬스	웬스 (H=1.6), L=91.62M	-	-	-							
	81	연수동	산62	차고	샌드위치 판넬/판넬	5.0*3.7	-	18.50	m <sup>2</sup>							
	82	연수동	산62	집 정문	샌드위치 판넬	문 (H=1.8), L=1.0M	-	-	-							
	83	연수동	산62	담장	샌드위치 판넬	담장 (H=1.8), L=5.63M	-	-	-							
	84	연수동	산62	축사	목재	1.5*4.3 + 0.5*1.0, H1.2	-	6.95	m <sup>2</sup>							
	85	연수동	산62	건사	샌드위치판 넬/판넬	1.2*2.0, H1.0	-	2.40	m <sup>2</sup>							
	86	연수동	산62	건사경 계	메쉬웬스	웬스 (H=1.2), L=5.5M	-	-	-							
87	연수동	산62	부속생 활실	컨테이너	3.4*3.0, H2.5	-	10.20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7	88	연수동	산62	보일러실	샌드위치판넬	3.25*0.7	-	2.28	m <sup>2</sup>	대0000	연수구 연수동	1/1				
	89	연수동	산62	부속생활실	샌드위치판넬/판넬	4.0*3.0, H2.5	-	12.00	m <sup>2</sup>							
	90	연수동	산62	창고	샌드위치판넬	3.0*2.5, H1.5	-	7.50	m <sup>2</sup>							
	91	연수동	산62	십자가철탑	철탑	2.0*2.0, H8.0	-	4.00	m <sup>2</sup>							
	92	연수동	산62	담장	합석웬스	담장 (H=1.6), L=7.3M	-	-	-							
	93	연수동	산62	울타리	메쉬웬스	웬스 (H=1.2M), L=37.88M	-	-	-							
	94	연수동	산62	차양(통로)	목재, 플라스틱골판	CAD 구적, H2.3	-	60.85	m <sup>2</sup>							
	95	연수동	산62	차양(건물입구)	목재, 플라스틱골판	5.63*1.2, H2.3	-	6.76	m <sup>2</sup>							
		연수동	산62	바닥	CON'C 포장	CAD 구적	-	198.05	m <sup>2</sup>							
		연수동	산62	바닥	블럭포장	CAD 구적	-	56.57	m <sup>2</sup>							
		연수동	산62	견사바닥	블럭포장	CAD 구적	-	11.34	m <sup>2</sup>							
	연수동	산62	살구나무-1, 곶감나무-2, 개나리-16, 목련나무-1, 매화나무-20, 수국나무-1, 사철나무-1, 복숭아나무-1, 모과나무-1, 뽕나무-2, 사찰나무-1, 매실나무-7, 사과나무-1, 포도나무-4, 배나무1, 뽕나무-52, 은행나무-2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8	96	연수동	산64-2	창고	파이프/천 막	6.0*5.8, H2.0	-	34.80	m <sup>2</sup>	대0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97	연수동	산64-2	창고	파이프, 철망 /슬레이트	4.8*4.8, H1.7	-	23.04	m <sup>2</sup>							
	98	연수동	산64-2	울타리	철재	웬스 (H=1.1~1.3), L=-40.0M	-	-	-							
		연수동	산64-2	바닥 포장	CON'C포 장	CAD 구적	-	77.63	m <sup>2</sup>							
		연수동	산64-2	바닥 포장	블록포장	CAD 구적	-	146.84	m <sup>2</sup>							
	연수동	산64-2	은행나무-9, 두릅나무-20, 사철나무-4, 소나무-25, 눈주목-14, 벗나무-26, 단풍나무-14, 감나무-7, 향나무-2, 살구나무-3, 목련나무-4, 가층나무-2, 두충나무-1, 함박꽃나무-1, 앵두나무-1, 개나리-28, 회양목-9, 라일락나무-1, 자두나무-1, 복숭아나무-4, 뽕나무-1, 메타세콰이어-5, 매실나무-41													
9	99	연수동	산64-3	주거지 및 사찰	목재 /슬레이트	CAD 구적	-	164.29	m <sup>2</sup>	김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100	연수동	산64-3	건물외 벽체	목재	L=6.9	-	-	-							
	101	연수동	산64-3	차양	목재 /슬레이트	3.0*6.9, H2.2	-	20.70	m <sup>2</sup>							
	102	연수동	산64-3	창고문	ST	Φ0.025, L2.5, H1.3	-	-	-							
	103	연수동	산64-3	화장실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2.0*2.2, H2.3	-	4.40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9	104	연수동	산64-3	석등	석재	0.6*0.6, H1.8	-	-	-	김00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1/1				
	105	연수동	산64-3	계단 (문수암 입구)	화강석 및 블럭포장	W1.5, L30.0, H0.5M	-	45.00	m <sup>2</sup>							
	106	연수동	산64-3	입구표 지석	화강석	1.2*1.3, H3.0	-	1.56	m <sup>2</sup>							
	107	연수동	산64-3	계단 (표지석 앞)	화강석 및 블럭포장	W3.0*L1.8, H0.5M	-	5.40	m <sup>2</sup>							
		연수동	산64-3	바닥 포장	블럭포장	CAD 구적	-	125.80	m <sup>2</sup>							
		연수동	산64-3	바닥 포장	화강석관석 포장	CAD 구적	-	3.70	m <sup>2</sup>							
		연수동	산64-3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55.40	m <sup>2</sup>							
		연수동	산64-3	갯나무-43, 측백-22, 홍자단-3, 소나무-2, 두릅-10 동백나무-2, 사철나무-2, 모과나무-11, 뽕나무-3 앵두나무-1, 감나무-4, 블루베리-2, 철죽나무-4 주목-1, 사철나무-232, 재피나무-1, 회양목-16, 장미-4, 황금사철-40, 엄나무-3, 뽕나무-4, 목련-4 보리수-1, 개나리-7, 나무수국-6, 살구나무-1, 단풍나무-3, 밤나무-3, 꽃사과나무-1					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3호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46호(2017. 10. 23.)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문학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하고 고시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694),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2. 25.

## 인 천 광 역 시 장

### I. 개발계획 수립(변경)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문학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 면적: 81,250m<sup>2</sup>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문학도시자연공원이 양분된 지역으로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었고 2020년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었음
- 공원기능의 상실에 따른 대체기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모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없음)

- 시행자: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 시행기간: 2011년 12월 26일 ~ 2019년 10월 31일
- 시행방법: 환지방식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계	81,250.0	100.0	
주 거 용 지	48,137.4	59.2	
기 반 시 설 용 지	31,237.1	38.5	
도 로	15,332.1	18.9	
보 행 자 도 로	78.0	0.1	
공 원	6,970.0	8.6	어린이1, 소1
녹 지	7,573.0	9.3	완충4
주 차 장	713.0	0.9	1개소
공 공 · 문 화 체 육 시 설	571.0	0.7	1개소
기 타 시 설 용 지	1,875.5	2.3	
종 교 용 지	634.5	0.8	1개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241.0	1.5	

7. 인구 및 주택배분계획 (변경)

구분				면적(m <sup>2</sup> )	층수	용적률	세대수		인구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48,213.9			833	992	2,100	2,500			
공동주택	A-1	1BL	60~85m <sup>2</sup> 미만	4,957.4	5층이하 (필로티층수 포함)	200%이하	30	100	76	252			
			85m <sup>2</sup> 초과				45	-	113	-			
			소계				75	100	189	252			
		4BL	60~85m <sup>2</sup> 미만	11,975.0			32	228	81	574			
			85m <sup>2</sup> 초과				138	-	347	-			
			소계				170	228	428	574			
	5BL	60~85m <sup>2</sup> 미만	11,885.0	32			244	81	614				
		85m <sup>2</sup> 초과		136			-	342	-				
		소계		168			244	423	614				
	계						28,817.4			413	572	1,040	1,440
	A-2	60~85m <sup>2</sup> 미만	2BL	2,033.9			5층이하 (필로티층수 포함)	200%이하	48	48	121	121	
			7BL	2,257.5					42	42	106	106	
			8BL	2,343.7					56	56	141	141	
			9BL	2,063.0					48	48	121	121	
			10BL	2,045.6					48	48	121	121	
			12BL	2,809.1					72	72	182	182	
			13BL	1,601.7					40	40	101	101	
			14BL	1,306.4					32	32	81	81	
			15BL	897.3					16	16	41	41	
			계						45,278.3			402	402
A-3	9BL	60~85m <sup>2</sup> 미만	2,038.3	3층이하 (필로티층수 포함)	180%이하	18	18	45	45				
세대당 인구				세대당 인구수 : 2.52인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									
인구밀도				기정) 258인/ha(순밀도 435인/ha)    변경) 307인/ha(순밀도 518인/ha)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변경 없음)

○ 게재생략

9.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위치 : 북동측 주거용지 진입도로
- 시설내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폭(B)	10m	소로 1-1
연장(L)	377m	
면적(A)	2,260㎡ (구역내=872㎡, 구역외=1,388㎡)	

- 설치시기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설치
- 비용부담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 신 설 】

- 위치 : ① 북측 진입도로 문학길 및 매소홀로 526번길  
② 소1-1호선 및 소2-8호선
- 시설내역 : ① 중앙선 및 주정차금지 도로 도색  
② 노상주차장 도로 표면 도색
- 설치시기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설치
- 비용부담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10.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694)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7)
- 열람내용: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 1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II. 실시계획(변경)

###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문학도시자연공원이 양분된 지역으로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었고 2020년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었음
- 공원기능의 상실에 따른 대체기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모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 면적: 81,250m<sup>2</sup>

### 4. 시행자 (변경 없음)

- 시행자: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조용구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 5. 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11년 12월 26일 ~ 2019년 10월 31일

### 6. 시행방식 (변경 없음)

- 환지방식

###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 조서

##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694)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7)
- 열람내용: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인가조건: 세부내용 생략)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문학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81,250	-	81,25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90호 (2006.5.29)

2.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1,250	-	81,250	100.0		
주거지역	소계	81,250	-	81,25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1,250	-	81,250	100.0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합계	17	2,008	15,410.1	2	486	1,989.0	11	1,417	12,866.1	4	105	555.0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7	2,008	15,410.1	2	486	1,989.0	11	1,417	12,866.1	4	105	555.0

주) 도로면적 및 연장은 사업구역 내의 면적 및 연장임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변경 사항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05	소로1-2	소로1-1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제78-49호	구역외
기정	소로	2	3	6~8	국지도로	62	소로1-2	소로1-1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제78-49호	구역외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627	소로1-2	소로3-2	일반도로		인천시고시 제87-1204호	구역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77	소로2-6	소로2-3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09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9	소로1-1	문학동161-4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04	소로1-1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1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0	소로1-1	소로2-2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99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76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62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598	소로2-6	소로2-1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63	소로2-3	소로2-11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03	소로2-3	소로2-5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72	소로2-6	소로2-10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소로2-8	문학동143-1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50	소로2-8	문학동 55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3	소로3-48	소로3-2	일반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19	소로3-2	문학동80-13	보행자 전용도로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노외주차장	남구 문학동 80번지 일원	713	-	713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나. 공간시설

1) 공 원

가) 공원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m <sup>2</sup> )		시가화구역(m <sup>2</sup>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	6,970		
어린이공원	1	2,205		
소 공 원	1	4,765		

나)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삼신공원	소공원	남구 문학동 산20-1번지일원	4,765	-	4,765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①	문학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남구 문학동 152번지 일원	2,205	-	2,205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문학공원은 결정 조서에서 제외

2) 녹 지

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573	-	7,573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남구 문학동 161-1번지 일원	1,045	-	1,045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남구 문학동 147-1번지 일원	3,775	-	3,775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남구 문학동 81-2번지 일원	2,572	-	2,572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남구 문학동 178-3번지 일원	181	-	181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4.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가. 문학 어린이공원

1)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m <sup>2</sup> )	시설면적 (m <sup>2</sup>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계	2,205	891	-	-	-	33		
공 원 시 설	기 반 시 설	계	549	549	-	-	-	
		도로	366	366	-	-	-	
		광장	183	183	-	-	-	
		조경시설	90	90	-	-	1	
		휴양시설	-	-	-	-	6	
		유희시설	166	166	-	-	5	
		운동시설	86	86	-	-	4	
		편익시설	-	-	-	-	-	
	관리시설	-	-	-	-	17		
녹지 및 기타	1,314	1,314	-	-	-	-	녹지율(59.6%)	
시설율(%) (법정 60%이하)	(891 ÷ 2,205) × 100 = 40.4%							
건폐율(%) (법정 5%)	-							

2) 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205	891					33	
기반 시설	소계			549	549						
	도로		문학동152번지	366	366						
	광장	가	문학동152번지	183	183						
조경 시설	소계			90	90					1	
	화계	나	문학동152번지	90	90						
	파고라	①	문학동152번지	-	-					(1)	
휴양 시설	소계			-	-					6	
	평의자	②	문학동152번지	-	-					(3)	
	연식의자	③	문학동152번지	-	-					(3)	
유희 시설	소계			166	166					5	
	놀이터	다	문학동152번지	166	166					-	
	조합놀이대	④	문학동152번지	-	-					(1)	
	바람개비자전거	⑤	문학동152번지	-	-					(2)	
	시소	⑥	문학동152번지	-	-					(1)	
	그네	⑦	문학동152번지	-	-					(1)	
운동 시설	소계			86	86					4	
	체력단련장	라	문학동152번지	86	86					-	
	체력단련시설	⑧	문학동152번지							(4)	
관리 시설	소계									17	
	종합안내판	⑨	문학동152번지							(1)	
	시설안내판	⑩	문학동152번지							(1)	
	공원표지석	⑪	문학동152번지							(1)	
	공원등	⑫	문학동152번지							(14)	
기타 시설	소계			1,314	1,314						
	녹지 및 기타		문학동152번지	1,314	1,314						

3) 도로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366					
신설	소계					78					
	소로	3	1	4	19.5	78	진입로	남측경계	산책로3		
	소계					288					
	산책로			1	2	55.0	110	진입로	서측경계	산책로2	
				2	2	34.0	68	진입로	북측경계	산책로3	
				3	2	50.0	100	연결로	소로3-1	산책로3	
				4	1	4.0	4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1	
				5	2	3.0	6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3	

나. 삼신 소공원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4,765	727	-	-	-	36	
공원 시설	계	677	677	-	-	-	
	기반 시설	506	506	-	-	-	
	도로	506	506	-	-	-	
	광장	171	171	-	-	-	
	조경시설	50	50	-	-	-	
	휴양시설	-	-	-	-	-	11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8
	편의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17	
녹지 및 기타	4,038	4,038	-	-	-	-	녹지율(84.7%)
시설율(%) (법정 20%이하)	$(727 \div 4,765) \times 100 = 15.3\%$						
건폐율(%) (법정 5%)	-						

2) 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765	727					36	
기반 시설	소 계			677	677						
	도 로		문학동산20-1번지	506	506						
	광 장	가	문학동산20-1번지	171	171						
	광 장 1	가-1	문학동산20-1번지	(151)	(151)						
	광 장 2	가-2	문학동산20-1번지	(20)	(20)						
조경 시설	소 계			50	50						
	초 화 원	나	문학동산20-1번지	50	50						
휴양 시설	소 계									11	
	파 고 라	①	문학동산20-1번지							(1)	
	평 의 자	②	문학동산20-1번지							(3)	
	등 의 자	③	문학동산20-1번지							(7)	
운동 시설	소 계									8	
	체 려 단 련 시설	④	문학동산20-1번지							(8)	
관리 시설	소 계									17	
	공 원 등	⑤	문학동산20-1번지							(17)	
기타 시설	소 계			4,038	4,038						
	녹지 및 기타			4,038	4,038						

## 3) 도로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337.3	506				
신설	소계				337.3	506				
	산책로		1	1.5	114.7	172	진입로	광장 가-2	초화원	
			2	1.5	8.0	12	진입로	북서측경계	초화원	
			3	1.5	7.3	11	진입로	광장가-2	산책로1	
			4	1.5	92.6	139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6	
			5	1.5	22.7	34	연결로	산책로4	광장가-1	
			6	1.5	92	138	연결로	초화원	광장가-1	

##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적정 획지구모	비 고
주거용지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계획 내용 반영</li> <li>• 단독·연립용지 (A-2, A-3)</li> </ul>

## 1) A-1용도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1	1	4,957.4	①	4,957.4	
			4	11,975.0	①
	②	1,736.9			
	③	2,701.3			
	④	1,706.6			
	⑤	2,485.5			
	⑥	585.8			
	⑦	319.4			
	5	11,885.0	①		4,030.2
	②		1,537.1		
	③		1,145.5		
	④		5,172.2		

## 2) A-2용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2	2	3,162.9	①	400.0	
			④	283.2	
			⑤	274.9	
			⑥	699.3	
			⑧	300.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7	2,257.5	①	300.0	
			②	317.1	
			③	300.0	
			④	300.0	
			⑤	392.8	
			⑥	300.0	
			⑦	347.6	
	8	2,343.7	①	395.2	
			②	395.2	
			③	353.3	
			④	300.0	
			⑤	300.0	
			⑥	300.0	
			⑦	300.0	
	9	4,101.3	①	318.9	
			②	324.1	
			③	376.5	
			④	370.1	
			⑤	373.4	
			⑥	300.0	
	10	2,045.6	①	408.9	
			②	300.0	
			③	359.7	
			④	302.8	
			⑤	374.2	
			⑥	300.0	
	12	2,809.1	①	300.0	
			②	300.0	
③			300.0		
④			300.0		
⑤			429.5		
⑥			300.0		
⑦			293.2		
⑧			293.2		
⑨			293.2		
13	1,601.7	①	300.0		
		②	300.0		
		③	354.3		
		④	323.7		
		⑤	323.7		
14	1,306.4	①	300.0		
		②	300.1		
		③	359.1		
		④	347.2		
15	897.3	①	530.7		
		②	366.6		

## 3) A-3용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A-3	9	4,101.3	⑦	308.4	
			⑧	308.3	
			⑨	308.3	
			⑩	308.3	
			⑪	431.1	
			⑫	373.9	

## 4) B용도 (종교집회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B	2	3,162.9	③	634.5	

## 5) C용도 (교육연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C	17	6,006.0	①	895.2	
			③	345.8	

## 6) D용도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D	2	3,162.9	②	571.0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변경)

【 기 정 】

도면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3	1-① 2-①,④,⑤,⑥,⑧ 4-①~⑦ 5-①~④ 7-①~⑦ 8-①~⑦ 9-①~⑫ 10-①~⑥ 12-①~⑨ 13-①~⑤ 14-①~④ 15-①,②	용도	허용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li> </ul>																													
			A-2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li> <li>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li> <li>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7가구 1층에 한함)</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지하층 주거용도</li> </ul>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1, A-2 : 200% 이하</li> <li>A-3 : 18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li> <li>A-3(9가구 ⑦~⑫획지) : 3층 이하(필로티 포함)</li> </ul>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li> <li>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li> <li>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은 고속도로 방향과 직각(측벽이 접하게 배치)으로 배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li> <li>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li> <li>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li>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은 5층에 한하여 교통소음차단체 설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li> <li>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li> </ul>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1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A-2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A-3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ul>																														
		가 구 별 세 대 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세대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A-1</td> <td>1가구</td> <td>75</td> </tr> <tr> <td>4가구</td> <td>170</td> </tr> <tr> <td>5가구</td> <td>168</td> </tr> <tr> <td rowspan="8">A-2</td> <td>2가구</td> <td>48</td> </tr> <tr> <td>7가구</td> <td>42</td> </tr> <tr> <td>8가구</td> <td>56</td> </tr> <tr> <td>9가구</td> <td>48</td> </tr> <tr> <td>10가구</td> <td>48</td> </tr> <tr> <td>12가구</td> <td>72</td> </tr> <tr> <td>13가구</td> <td>40</td> </tr> <tr> <td>14가구</td> <td>32</td> </tr> <tr> <td>A-3</td> <td>9가구</td> <td>18</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대수	A-1	1가구	75	4가구	170	5가구	168	A-2	2가구	48	7가구	42	8가구	56	9가구	48	10가구	48	12가구	72	13가구	40	14가구	32	A-3	9가구	18
		구 분		세대수																													
A-1	1가구	75																															
	4가구	170																															
	5가구	168																															
A-2	2가구	48																															
	7가구	42																															
	8가구	56																															
	9가구	48																															
	10가구	48																															
	12가구	72																															
	13가구	40																															
	14가구	32																															
A-3	9가구	18																															

• A-1용지 : 획지별 세대수는 가구별 전체 세대수를 획지면적 비율로 배분  
 • A-2용지 : 획지당 8세대 이하  
 • A-3용지 : 획지당 3세대 이하

【 변 경 】

도면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3	1-① 2-①,④,⑤,⑥,⑧ 4-①~⑦ 5-①~④ 7-①~⑦ 8-①~⑦ 9-①~⑫ 10-①~⑥ 12-①~⑨ 13-①~⑤ 14-①~④ 15-①,②	용도	<table border="1"> <tr> <td>허용</td> <td>A-1</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li> </ul> </td> </tr> <tr> <td></td> <td>A-2 A-3</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li> <li>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li> <li>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7가구 1층에 한함)</li> </ul> </td> </tr> <tr> <td>불허</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지하층 주거용도</li> </ul> </td> </tr> </table>	허용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li> </ul>		A-2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li> <li>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li> <li>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7가구 1층에 한함)</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지하층 주거용도</li> </ul>																						
			허용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li> </ul>																													
				A-2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li> <li>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li> <li>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7가구 1층에 한함)</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지하층 주거용도</li> </ul>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1, A-2 : 200% 이하</li> <li>A-3 : 18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li> <li>A-3(9가구 ⑦~⑫획지) : 3층 이하(필로티 포함)</li> </ul>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li> <li>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li> <li>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은 고속도로 방향과 직각(측벽이 접하게 배치)으로 배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li> <li>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li> <li>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li>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은 5층에 한하여 교통소음차단체 설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li> <li>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li> </ul>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1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A-2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A-3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ul>																																	
가 구 별 세 대 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세대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A-1</td> <td>1가구</td> <td>100</td> </tr> <tr> <td>4가구</td> <td>228</td> </tr> <tr> <td>5가구</td> <td>244</td> </tr> <tr> <td rowspan="7">A-2</td> <td>2가구</td> <td>48</td> </tr> <tr> <td>7가구</td> <td>42</td> </tr> <tr> <td>8가구</td> <td>56</td> </tr> <tr> <td>9가구</td> <td>48</td> </tr> <tr> <td>10가구</td> <td>48</td> </tr> <tr> <td>12가구</td> <td>72</td> </tr> <tr> <td>13가구</td> <td>40</td> </tr> <tr> <td rowspan="2">A-3</td> <td>14가구</td> <td>32</td> </tr> <tr> <td>15가구</td> <td>16</td> </tr> <tr> <td></td> <td>9가구</td> <td>18</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대수	A-1	1가구	100	4가구	228	5가구	244	A-2	2가구	48	7가구	42	8가구	56	9가구	48	10가구	48	12가구	72	13가구	40	A-3	14가구	32	15가구	16		9가구	18
구 분		세대수																																
A-1	1가구	100																																
	4가구	228																																
	5가구	244																																
A-2	2가구	48																																
	7가구	42																																
	8가구	56																																
	9가구	48																																
	10가구	48																																
	12가구	72																																
	13가구	40																																
A-3	14가구	32																																
	15가구	16																																
	9가구	18																																

• A-1용지 : 획지별 세대수는 가구별 전체 세대수를 획지면적 비율로 배분  
 • A-2용지 : 획지당 8세대 이하  
 • A-3용지 : 획지당 3세대 이하

2) 종교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B	2-③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내 아동관련시설 허용)</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li> <li>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li> <li>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li> <li>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li> <li>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ul>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C	17-①, ③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도서관</li> <li>제11호 노유자시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li> <li>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li> <li>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li> <li>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li> <li>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ul>			

## 4)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D	2-②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li> <li>•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li> <li>• 제11호 노유자시설</li> </ul>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층 이하</li> <li>(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li> <li>•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li> <li>•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li> <li>•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li> <li>•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li> </ul>	
		건축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A-1 A-2 A-3	1-① 2-①, ④, ⑤, ⑥, ⑧ 4-①~⑦ 5-①~④ 7-①~⑦ 8-①~⑦ 9-①~⑫ 10-①~⑥ 12-①~⑨ 13-①~⑤ 14-①~④ 15-①, ②	대지내 공 지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li> <li>• 공공보행통로지정(4, 5가구) - 동서방향 중앙 획지(4가구 ①~⑤, ⑦ 획지 / 5가구 ①, ③, ④ 획지)에 대하여 획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1.5m를 지정하여 공공보행통로(폭 3M) 지정</li> <li>- 소1-2호선 및 소2-3호선과 접하여 있는 획지에 대해서는 획지경계선으로부터 2m의 공공보행통로 지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li> <li>•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지하시설물 포함)은 설치할 수 없음 (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의 예외)</li> </ul>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li> </ul>	
		차량출입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획지의 구간</li> </ul>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 내에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최소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li> </ul>	
B C D	2-③ 17-①, ③ 2-②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시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름)</li> </ul>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li> </ul>	
		차량출입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획지의 구간</li> </ul>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 내에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li> </ul>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6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③단계)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56호(2019. 1. 7)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I.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실시계획 변경

##### ◆ 변경사유

- 청라국제도시 R&D 및 첨단산업용지 내 필지 중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물류취급설비 TEST동)에 대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1. 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3. 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변경없음】
6.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8. 지구단위계획 : 붙임 **【변경】**
9.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변경없음】
10. 위치도·계획평면도(S=1/10,000)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용지도(S=1/2,400)·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12.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없음】
13.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4.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5.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 게재생략 【변경없음】
- 16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7.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18.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변경없음】
19.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변경없음】

## II. 관련 도서의 열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61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23)에서 가능

### 붙임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2-③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변경없음】
  -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3) R&D 및 첨단산업용지 외 변경사항 없음
    - 3) R&D 및 첨단산업용지(**변경**)
      - 사유 : 청라국제도시 R&D 및 첨단산업용지 내 필지 중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물류취급설비 TEST동)에 대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3	F3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li> <li>-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한다.</li> <li>-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한다.</li> </ul> </li> <li>• 위항의 조건이 겹치는 필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한다.</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고 및 공장의 외벽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의 혼합 또는 색채 변화 및 개성있는 외관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li> <li>•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투시형 담장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하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제한함</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lt;별표14&gt;을 따른다.</li> </ul> </li> </ul>
경관계획 (경관상세계획)의 운용	• 본 지구단위계획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상세계획) 중에서 R&D 및 첨단산업용지 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거나, 경관계획(또는 경관상세계획)상의 지침과 본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침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상세계획)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봄		

<별표 6> R&D 및 첨단산업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R&D 및 첨단산업용지(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	
도면표시	F	
건축물 용도	허 용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li> <li>• 공동주택 중 기숙사(부수 용도에 한함)</li> <li>•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li> </ul> </li> <li>■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li> <li>■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li> <li>※ 유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정보통신) 관련업종</li> <li>• 자동차 관련업종</li> <li>• (신)소재 관련업종</li> <li>• 로봇 관련업종</li> <li>• R&amp;D기업</li> </ul> </li> </ul>
권 장 용 도	F1-① ~ ⑧	• 자동차 관련업종
	F3-④ ~ 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소재 관련업종</li> <li>• 로봇 관련업종</li> <li>• IT(정보통신) 관련업종</li> </ul>
	불허용도	• 권장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최고층수	F3-⑤ (-1제외), F3-⑥ (-1제외), F3-⑧~⑩	5층 이하
	F3-④, F3-⑤-1, F3-⑥-1, F3-⑦	7층 이하
	해당블럭	F3-④~⑩
	주석	<p>주1) 허용용도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시설, 공장으로 하되, 첨단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IHP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정한 '환경기준제한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으로 함.</p> <p>주2) 허용용도상의 '유치업종'은 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유치업종을 말함</p>

구 분	R&D 및 첨단산업용지(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	
도면표시	AF	
건 축 물 용 도	허 용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li> <li>•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20%이하에 한함)</li> <li>•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li> <li>•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창고시설</li> <li>• 운수시설(집배송시설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li> </ul> </li> <li>■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li> <li>■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li> <li>■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입주 지원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사,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지원시설 (단, 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ul> </li> <li>※ 유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정보통신) 관련업종</li> <li>• 자동차 관련업종</li> <li>• (신)소재 관련업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관련업종</li> <li>• R&amp;D기업</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10층 이하
	해당블럭	F3-①~③
주석		<p>주1) 허용용도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시설, 공장으로 하되, 첨단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IHP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정한 '환경기준제한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으로 함.</p> <p>주2) 허용용도상의 '유치업종'은 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유치업종을 말함</p>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F3	F3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용도는 &lt;별표6&gt;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건폐율은 &lt;별표6&gt;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용적률은 &lt;별표6&gt;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층수는 &lt;별표6&gt;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li> <li>-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한다.</li> <li>-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한다.</li> </ul> </li> <li>• 위항의 조건이 겹치는 필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한다.</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고 및 공장의 외벽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의 혼합 또는 색채 변화 및 개성있는 외관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li> <li>•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투시형 담장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하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제한함</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lt;별표14&gt;을 따른다.</li> </ul> </li> </ul>
경관계획(경관상세계획)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지구단위계획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상세계획) 중에서 R&amp;D 및 첨단산업용지 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거나, 경관계획(또는 경관상세계획)상의 지침과 본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침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상세계획)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봄</li> </ul>		

〈별표 6〉 R&D 및 첨단산업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R&D 및 첨단산업용지(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	
도면표시		F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li> <li>• 공동주택 중 기숙사(부수 용도에 한함)</li> <li>•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li> </ul> </li> <li>■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li> <li>■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li> <li>■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li> </ul> <p>※ 유치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정보통신) 관련업종</li> <li>• 자동차 관련업종</li> <li>• (신)소재 관련업종</li> <li>• 로봇 관련업종</li> <li>• R&amp;D기업</li> </ul>	
	권장 용도	F1-① ~ ⑧	• 자동차 관련업종
		F3-④ ~ ⑩	• (신)소재 관련업종 • 로봇 관련업종 • IT(정보통신) 관련업종
	불허용도	• 권장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최고층수	F3-⑤ (-1제외), F3-⑥ (-1제외), F3-⑧~⑩	5층 이하	
	F3-④, F3-⑤-1, F3-⑥-1, F3-⑦	7층 이하	
해당블럭	F3-④~⑩		
주석	<p>주1) 허용용도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시설, 공장으로 하되, 첨단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IHP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정한 '환경기준제한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으로 함.</p> <p>주2) 허용용도상의 '유치업종'은 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유치업종을 말함.</p> <p>주3) F3-⑤-3 필지내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물류취급설비 TEST동)에 한하여 최고층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신설)</p>		

구 분	R&D 및 첨단산업용지(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	
도면표시	AF	
건 축 물 용 도	허 용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li> <li>•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20%이하에 한함)</li> <li>•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li> <li>•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창고시설</li> <li>• 운수시설(집배송시설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li> </ul> </li> <li>■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li> <li>■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li> <li>■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입주 지원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사,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지원시설 (단, 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ul> </li> </ul> <p>※ 유치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정보통신) 관련업종</li> <li>• 자동차 관련업종</li> <li>• (신)소재 관련업종</li> <li>• 로봇 관련업종</li> <li>• R&amp;D기업</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10층 이하	
해당블럭	F3-①~③	
주석	<p>주1) 허용용도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시설, 공장으로 하되, 첨단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IHP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정한 '환경기준제한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으로 함.</p> <p>주2) 허용용도상의 '유치업종'은 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유치업종을 말함</p>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제3장 R&D 및 첨단산업용지 제2조

〈표Ⅱ-3-1〉 R&D 및 첨단산업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구 분		R&D 및 첨단산업용지(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		
도면표시		F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li> <li>• 공동주택 중 기숙사(부수 용도에 한함)</li> <li>•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li> </ul> </li> <li>■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li> <li>■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li> <li>■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li> </ul> <p>※ 유치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정보통신) 관련업종</li> <li>• 자동차 관련업종</li> <li>• (신)소재 관련업종</li> <li>• 로봇 관련업종</li> <li>• R&amp;D기업</li> </ul>		
	권장 용도	F1-① ~ ⑧	• 자동차 관련업종	
		F3-④ ~ 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소재 관련업종</li> <li>• 로봇 관련업종</li> <li>• IT(정보통신) 관련업종</li> </ul>	
	불허용도		• 권장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최고층수	F3-⑤ (-1제외), F3-⑥ (-1제외), F3-⑧~⑩		5층 이하	
	F3-④, F3-⑤-1, F3-⑥-1, F3-⑦		7층 이하	
해당블럭		F3-④~⑩		

주1) 허용용도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시설, 공장으로 하되, 첨단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IHP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정한 '환경기준제 한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으로 함.

주2) 허용용도상의 '유치업종'은 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유치업종을 말함.

주3) F3-⑤-3 필지내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물류취급설비 TEST동)에 한하여 최고층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신설)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35호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공고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5.

### 인 천 광 역 시 장

1. 용자규모 : 300억원

2. 용자대상

-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 여부 :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 '19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소상공인

3. 용자내용

- 용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용자금리 : 중앙회 최저임금보장 경영애로기업 및 위기지역 지원 특례보증 금리 적용 (CD+1.65%)
- 용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0% 5년간 지원
-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 인천신용보증재단 연 0.8%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인천소재, 출장소포함)

4. 용자제외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 되는 기업(별첨 “재보증 제한업종” 참조)

### 5. 용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2. 18.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수처 : NH농협은행 인천 전 지점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7. 구비서류

신청서류	세부내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 계약서 사본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원초본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금융거래확인서	- 접수일 현재 여신 잔액이 15백만원 초과인 금융기관
5.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세무서 또는 홈텍스 발급 가능
6. 대표자 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기업의 급여대장, 급여가 기재된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중 택 1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대상은 제외	- “19년 최저임금 준수” 및 “1개월 이상 고용” 여부는 대표자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유사명칭 포함/발급 금융기관 직인 날인본), 기업의 급여대장, 급여가 기재된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1개월 이상 고용확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

### 8. 대출개시일 : 2019. 2. 18.

### 9. 상담 및 문의

- NH농협은행 대표전화 ☎ 1588-2100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 1577-3790

## 【별첨】

## 재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	업 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신설 2010.11.30)
56212	무도유흥 주점업(신설 2010.11.30)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37호

##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공고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5.

### 인 천 광 역 시 장

1. 용자규모 : 100억원

2. 용자대상

- 교육서비스업(8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95~96)을 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3. 용자내용

- 용자한도 : 기업(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용자금리 : 금융기관 협약금리 적용 (CD+1.65%)
- 용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4년간 지원
-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 인천신용보증재단 연 0.8%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인천소재, 출장소포함)

4. 용자제외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 되는 기업(별첨 “재보증 제한업종” 참조)

5. 용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2. 18.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수처 : NH농협은행 인천 전 지점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7. 구비서류

신청서류	세부내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 계약서 사본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원초본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금융거래확인서	- 접수일 현재 여신 잔액이 15백만원 초과인 금융기관
5.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세무서 또는 홈텍스 발급 가능

## 8. 대출개시일 : 2019. 2. 18.

## 9. 상담 및 문의

- NH농협은행 대표전화 ☎ 1588-2100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 1577-3790

## 【별첨】

## 재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	업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신설 2010.11.30)
56212	무도유흥 주점업(신설 2010.11.30)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3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1) 업 체 명 : (주)이앤
- 2) 대 표 자 : 이찬우, 김도희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논현동)
- 4) 등 록 번 호 : 제2019-1호
- 5) 등 록 일 자 : 2019. 2. 19.
-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3, 5-6, 8호 업무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339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2. 18.

##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 단체명 :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비 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06-0-인천 광역시-24호 (2006. 7. 11.)	(사)한국 국악협회 인천광역시 지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 인천국악회관 1층	대표자	이순희	유은자	대표자 변경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41호

##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동춘근린공원】

###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동춘근린공원) 결정(최초)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2. 20.

## 인 천 광 역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최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최초	동춘공원	근린공원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59-1번지 일원	431,503	

###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4)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2)

###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342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2. 18.

##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 단체명 : 인천 자바르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주관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09-0-인천 광역시-45호 (2009. 10. 22.)	인천 자바르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40번길 5-4, 4층(부평동)	대표자	이찬영	이경욱	대표자 변경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공고제2019-35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 1) 업 체 명 : (주)유니온환경안전
- 2) 대 표 자 : 유찬영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  
스밸리 C동 1206호
- 4) 등 록 번 호 : 제2018-1호
- 5) 등 록 연 월 일 : 2018.01.13.
-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 7) 취 소 일 자 : 2019.02.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56호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5.

##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158-1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학익배수지(증설) 건설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변경)
  - 당초 : 30,773m<sup>2</sup> 중 15,003m<sup>2</sup>
  - 변경 : 31,951m<sup>2</sup> 중 15,003m<sup>2</sup>
- 규모(변경없음)
  - 배수지 증설: V=20,000m<sup>3</sup>(기존 20,000m<sup>3</sup>, 합계 40,000m<sup>3</sup>)
  - 건축공사: 건축면적 71.95m<sup>2</sup>/ 연면적 180.50m<sup>2</sup>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일: 2018. 11. 19.
- 준공예정일: 2020.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편입토지조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변경						
1	미추홀구 학익동	158-15	수	26,560	24,384	24,565	증)181	인천광역시				
2	미추홀구 학익동	158-17	임	5,171.0	870.0	1,267.0	증)397	산림청				
3	미추홀구 학익동	158-1	전	1,653.0	126.0	126.0	-	인천광역시 장○렬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학익1동 **			
4	미추홀구 학익동	157-3	임	4,253.0	3,384.0	3,961.0	증)577	산림청				
5	미추홀구 학익동	96-16	도	23,956.0	1,493.0	1,516.0	증)23	국토교통부				
6	미추홀구 학익동	산77-5	임	156.0	35.0	76.0	증)41	정○아	인천광역시 남구 햇골길 **			
7	미추홀구 학익동	155-2	도	273.0	83.0	83.0	-	국토교통부				
8	미추홀구 학익동	156-14	도	696.0	172.0	131.0	감)41	국토교통부				
9	미추홀구 학익동	156-3	도	208.0	4.0	4.0	-	국토교통부				
10	미추홀구 학익동	156-2	도	304.0	129.0	129.0	-	국토교통부				
11	미추홀구 학익동	156-12	도	83.0	8.0	8.0	-	국토교통부				
12	미추홀구 학익동	156-13	도	81.0	73.0	73.0	-	국토교통부				
13	미추홀구 학익동	156-6	대	81.0	12.0	12.0	-	국토교통부				
합 계				63,475	30,773	31,951	증)1,178					

## ○ 편입지장물조사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유자		용도	비고
	사군	리동	지번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 소		
1	미추홀구	학익동	158-15	건축물	조적조	50.7㎡	50.7㎡	-	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주택	
				건축물	조립식	18.5㎡	-	감)18.5㎡			창고	
				건축물	조립식	10.0㎡	-	감)10.0㎡			창고	
2	미추홀구	학익동	158-15	건축물	조적조	134.1㎡	134.1㎡		정○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식당	
				건축물	조립식	69.4㎡	69.4㎡				식당	
				건축물	조립식	38.5㎡	38.5㎡	-			창고, 축사	
3	미추홀구	학익동	158-15	건축물	조적조	93.6㎡	93.6㎡	-	김○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주택	
				건축물	조립식	-	18.5㎡	증)18.5㎡			창고	
				건축물	조립식	-	10.0㎡	증)10.0㎡			창고	
4	미추홀구	학익동	158-15	건축물	조적조	91.9㎡	91.9㎡	-	윤○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주택	
5	미추홀구	학익동	산81-4	건축물	조적조	104.7㎡	104.7㎡	-	정○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식당	
6	미추홀구	학익동	산81-4	건축물	조적조	174.6㎡	174.6㎡	-	구○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주택	
				건축물	조적조	11.8㎡	11.8㎡	-			창고	
7	미추홀구	학익동	158-15	건축물	조적조	102.9㎡	102.9㎡	-	윤○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주택	
8	미추홀구	학익동	158-15	건축물	조적조	65.0㎡	-	감)65.0㎡	강○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주택	
9	미추홀구	학익동	158-15	건축물	조적조	-	11.4㎡	증)11.4㎡	김○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주택	
10	미추홀구	학익동	158-15	건축물	조적조	167.3㎡	167.3㎡	-	전○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주택	
11	미추홀구	학익동	158-17	건축물	조적조	223.4㎡	223.4㎡	-	이○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주택	
				건축물	비닐하우스	48.9㎡	48.9㎡	-			창고	
				건축물	비닐하우스	37.2㎡	-	감)37.2㎡			창고	
12	미추홀구	학익동	158-1	건축물	조적조	119.0㎡	119.0㎡	-	김○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1번길 **	주택	
				건축물	비닐하우스	14.4㎡	14.4㎡	-			창고	
13	미추홀구	학익동	158-15	건축물	조립식	23.0㎡	23.0㎡	-	김○규	맹지	주택	
				건축물	가설 건축물	57.0㎡	57.0㎡	-			창고	
				건축물	가설 건축물	27.9㎡	27.9㎡	-			가시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12.4㎡	12.4㎡	-			가시설	
14	미추홀구	학익동	158-1	식익식물	두릅나무	500주	500주	-	이○숙	맹지		
15	미추홀구	학익동	156-14	유실수	대추나무	24주	24주	-	장○일	맹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 없음

8.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2,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8, 미추홀구 독정리로 88)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63호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 2. 25.

## 인천광역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소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160
- 소청도 해수담수화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147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서해5도(소연평도, 소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소연평도	소청도
면적	410㎡	536㎡
규모	시설용량 Q=75㎡/일(건축면적 62.86㎡)	시설용량 Q=200㎡/일(건축면적 96.88㎡)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 5. 사업기간

- 2018. 12. ~ 공사완료 공고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76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5.

### 인천광역시장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안) 주요 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34-9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수도공급설비 (용유배수지)	중구 을왕동 산34-9번지 일원	-	25,568 ㎡	25,568 ㎡	-	-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면적(㎡)	결정 사유
1	수도공급설비 (용유배수지)	· 신설 - 면적: 25,568㎡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간접배수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신설

#### 2. 열람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 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2,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77호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 인 천 광 역 시 장

구 분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양도· 양수일
양 도 인	정보통신공사업 (제201601호)	주식회사 피앤시 정 수 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7, (서초동, 4층)	2019. 1.29.
양 수 인	정보통신공사업	주식회사 두긱이엔지 전 미 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21번길 25, 501-3호 (원당동, 제일프라자)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84호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5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3류58호선, 사업명: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9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032-440-5319),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25.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4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류58호선)

【명칭】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규모 :

- 대로3류 58호선 : L=8,510m 중 L=149m, B=10m(일부구간 도로확장)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과 같음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편입용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	편입면적 (㎡)	잔여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마전동	242-25	도	2451.0	164.0	2,287.0		인천광역시	
2	마전동	242-17	도	257.0	128.0	129.0		인천광역시	
3	마전동	239-3	도	269.0	198.0	71.0		인천광역시	
4	마전동	241-6	도	427.0	351.0	76.0		인천광역시	
5	마전동	241-1	전	60.0	60.0	0.0		인천광역시	
6	마전동	240	대	21.0	21.0	0.0		인천광역시	
7	마전동	240-6	도	24.0	24.0	0.0		인천광역시	
8	마전동	287-6	구	71.0	71.0	0.0		인천광역시	
9	마전동	287-1	전	94.0	94.0	0.0		인천광역시	
10	마전동	287-15	천	27.0	9.0	18.0		인천광역시 서구	
11	마전동	241-5	도	183.0	18.0	165.0		인천광역시	
12	마전동	241-3	도	120.0	1.0	119.0		인천광역시	
13	마전동	728-6	도	750.0	117.0	633.0		국(국토교통부)	
14	마전동	287-3	도	291.0	203.0	88.0	김포군 김단면 마전리 ***	덕**범	
15	마전동	287-11	도	31.0	26.0	5.0		인천광역시	
합계				5,076.0	1,485.0	3,59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95호

##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재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발굴하여 동료상담 및 자조활동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기관을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9. 2.25(월) ~ 2019. 3. 4(월)
- 사업명 :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 기간 : 위탁계약 체결 후 ~ 2019. 12. 31.
- 내용 :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동료지원가(월 최소 60시간 근무, 4대보험 필수) 1명이 참여자 48명에 대해 동료지원활동
- 주요업무
  - 동료지원가 모집 및 고용(10명)
  - 참여자 발굴 및 모집(480명)
  - 참여자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업연계
  - 참여자 사후관리
  - 동료지원 활동 실적 등 보고
  - 기타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 상해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수행기관에서 부담)
- 사업비 : 124,800천원(기본운영비 및 연계수당)
  - ※ 2019년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④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이어야 함.

##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3. 4.(월) ~ 3. 5(화) 09:00~18:00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본관 1층)
-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09시~18시) 내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위탁운영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함)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기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선정심사에 참고 될 수 있는 증빙자료
- 제출방법
  - 목록 순서대로 제본(A4종)하여 10부 제출(목차 및 페이지 기입)
  - 파일자료 별도 제출(goodhanyoung@korea.kr)

#### 4.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면접 심사
  -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사업계획 설명
  - 최고득점(70점 이상) 2개 기관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예정
  - 심사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 선정심사위원회 일정은 별도 안내
- 심사항목 : 수행기관 적합성(15), 사업운영 안정성(20), 사업계획의 타당성(65)

#### 5. 선발 우대사항

- 신청기관이 공단 취업지원 사업(지원고용)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하되, 사업 수행여부는 약정서 기준으로 판단

#### 6. 선정 발표 : 2019. 3. 15.(금) 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기타사항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인천시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인천시의 명예훼손 및 민원발생시 등
- 수행기관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와 설명으로 심사함으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협약이 취소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440-2942)

붙임 :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01호

##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공고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제966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 2. 22.

### 인 천 광 역 시 장

#### 1.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

##### 가. 중형택시, 모범·대형 요금

구 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기본요금 (중형:2km,모범:3km)	3,000원	3,800원	5,000원	6,500원
이후 거리요금	144m/100원	135m/100원	164m/200원	151m/200원
이후 시간요금	35초/100원	33초/100원	39초/200원	36초/200원
심야 할증 (00:00~04:00)	20%	20%	-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20%	30%	-	-
인 상 율(%)	-	17.80%	-	11.20%

##### 나. 소형택시 및 경형택시 요금

구분	기본요금 (3km)	거리요금 (200원)	시간요금 (200원)	비고
소형	2,500원	184m	44초	

구분	기본요금 (3km)	거리요금 (200원)	시간요금 (200원)	비고
경형	2,100원	145m	35초	

#### 다. 대절요금(관광택시 등) - 신설

제 목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일	비고
중형	20,000	50,000	80,000	150,000	180,000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모범·대형	25,000	70,000	100,000	170,000	200,000	
대형승합	30,000	80,000	110,000	180,000	210,000	

2. 인상 시행일 : 2019. 3. 9(토) 04:00부터

####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택시화물과 택시정책팀(☎440-38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19-1호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규)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신규)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주)우솔방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34, 청송빌딩 402호 (만수동)	엄 병 영	소방시설 관리업	제 인천(남동) -2019-0001 호	2019.2.22.	

2019. 2. 22.

인천남동소방서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32호

# 송도국제도시 연구소 용지 내 입주기업 모집 공고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에 국내 우수기업의 연구소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합니다.

이 공고문은 용지공급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 신청자는 반드시 동 “용지공급지침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공급지침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 홈페이지([www.ifez.go.kr](http://www.ifez.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IFEZ 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1. 사업개요

가. 부지위치: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산업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상 Ks7(송도동 204), Ks10(송도동 210-2)

나. 부지면적: 총 54,297.5㎡ (6개 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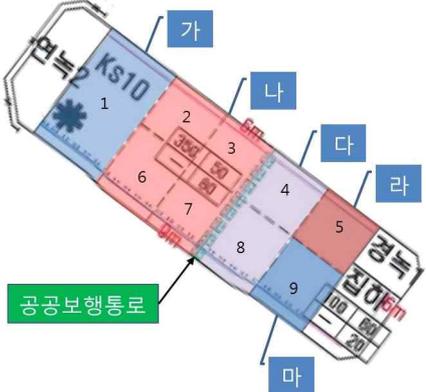
다. 대상기업: 유치대상 업종을 영위하며 연구소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

라. 시행자: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위치도>



2. 공급대상 부지현황 ※ 1획지에 한하여 1건만 신청 가능

연번	공급획지	면적		허용용도	획지위치
		m <sup>2</sup>	3.3m <sup>2</sup>		
1	Ks7	28,722.4	8,688.5	▷ 주용도(80% 이상) - 연구소, 업무시설 ▷ 부용도(20% 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	◦ 단일 획지로 매각
2	Ks10(가)	6,017.3	1,820.2	▷ 주용도(80% 이상) - 연구소, 업무시설 - 도시형공장 (30% 미만) ▷ 부용도(20% 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	 <p>※ 분할측량 예정으로 면적변동 가능</p>
3	Ks10(나)	9,633.4	2,914.1		
4	Ks10(다)	5,108.3	1,545.3		
5	Ks10(라)	2,190.6	662.7		
6	Ks10(마)	2,625.5	794.2		
	합 계	54,297.5	16,425.0		

※ 실시계획 변경(허용용도 등) 예정이며 허용용도 등 상세내용은 용지공급지침서 참고

3. 부지 공급가격: 조성원가(80%) + 감정평가(20%)

※ 조성원가: 747,568원/m<sup>2</sup>(247만원/3.3m<sup>2</sup>)

※ 감정평가: 공급대상자 선정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청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획지별로 평가 예정

4. 공급조건

가. (지정용도 사용의무) 사업자는 목적용지의 매수를 위해 입주심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개발기한의 준수의무) 사업자는 토지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준공하여

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회(최대 6개월까지)에 한하여 연장요청이 가능하다.

다. (재산의 담보제공 및 처분제한) 본사업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목적용지 또는 목적시설 등을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 및 제3자에게 매각을 금지한다. 단, 준공일 이후에는 목적용지 또는 목적시설 등을 본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 담보로 제공이 가능하다.

라. (소유권이전 이후의 의무이행 담보) 의무사항 위반 등으로 토지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자가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환매특약 및 환매등기 설정)

5. 유치대상 업종: 지구단위계획상 입주 가능한 업종(용지공급 지침서 참고)

## 6. 공급기준 및 일정

### 6-1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가. 획지별로 입주기업 심의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도 구성하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의한 후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심의과정 및 그 내용은 비공개한다.

나. 입주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용지공급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6-2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가. 평가점수: 기업평가(정량) 40점+사업계획평가(정성) 60점+가점 10점

- 기업 평가 : 기업규모, 재무안정성, 연구능력, 기술능력
- 사업계획 평가: 재원확보계획, 시설계획, R&D운영계획
- 가점: 인천시 기여방안(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 및 지역산업에 파급력이 큰 기술보유, 동반성장 관련 계획)

나. 적격업체 선정기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신청자

## 6-3 공급일정

구 분	추진일정	장 소
모집공고	2019.02.21.(목)	인천시(경제청) 홈페이지, 일간지
신청서 접수	2019.03.28.(목)	경제청 신성장산업유치과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 타워 27층)
입주심의	2019.04.	경제청(입주심의위원회)
공급대상자 발표	2019.04.30.(화)	개별통보
토지매매계약 체결	2019.05.24.(금)	경제청 기획정책과(용지분양팀)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함

※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가 없는 필지, 공급대상자 미선정 필지 혹은 미계약 필지에 대해서는 추후별도 공급 예정임

## 6-4 총괄 절차도

구분	절차	담당부서
계약 단계	모집공고	신성장산업유치과
	사업계획심사(입주심의위원회)	신성장산업유치과
	토지매매계약	기획정책과
↓		
인·허가 단계	경관심의 (연면적 5,000㎡ 이상)	도시디자인단
	건축허가	도시건축과
↓		
공사 단계	착공 (계약체결 후 1년 이내)	도시건축과
	준공 (착공 후 2년 이내)	도시건축과

##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 7-1 계약체결

- 공급대상자 발표 시 지정된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7-2 대금납부방법

가. 일시납 : 계약금(계약일자 : 매매대금의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3개월 : 매매대금의 40%),

잔 금(계약일로부터 6개월 : 매매대금의 50%)

나. 사업자가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① 1년간 3개월 단위(4회)로 균등분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금리를 적용한다.
- ③ 할부이자는 할부대금 납부 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 8. 제출서류

- 입주기업 심의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서약서(소정양식) 1부
- 기업현황 요약서(소정양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필요시) 사본 1부
- 제출자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1부
- 사업계획서(공통) 10부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는 용지공급지침서를 참고하여 각 1부 제출

## 9. 유의사항

- 가. 공급대상자 선정이후 공급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해제·해지되는 등의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공급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됨
- 다. 법인명의 신청 시 법인등기부상 임원명의로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행위 및 서로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면서 각 법인 명의로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청한 모든 필지에 대하여 입주신청을 무효로 함
- 라. 대리인에 의한 입주신청은 1업체당 1명에 한하며, 동일 대리인이 여러 업체를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한 모든 필지를 무효로 함
- 마. 신청자는 신청코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계약해제(또는 해지) 등 상세한 사항은 “용지공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히 열람 숙지하여야 함
- 바. 모집공고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참고할 자료가 추가된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www.ifez.go.kr](http://www.ifez.go.kr)) IFEZ 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 수시로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신성장산업유치과 부품소재팀(032-453-7382~3)

2019. 2. 2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44호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불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02.18. ~ 2019.03.04.(15일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19년 04월 01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9년 04월 01일

####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3)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 제1725호 시보에 게재된 내용과 같으며, 공시송달 대상 명단을 첨부하여 다시 게재함

### 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대상

연번	과태료 대장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 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867	김**	광주광역시서구 금화로***번길 27, (금호동, 모아아파트)	좌 동	2018. 12. 12. 16:16.	중구 향동과 인중로(향동과 적검문소)	길이2.90미터초과 (길이19.60미터)	전남98 바90**	300,000	반송(수취 인불명)	
2	000007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 (동춘동)	좌 동	2019.01.04. 14:05.	연수구 송도동 인천 신항대로	길이1.50미터 초과(길이18.20미 터)	경기98 자86**	300,000	반송 (이사감)	
3	000012	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송산로 ***-*** (구산동)	좌 동	2019.01.07. 10:48.	계양구 작전동 아나지로	축하중1.85톤 초과(4축하중11.8 5톤)	서울06 파79**	500,000	반송(폐문 부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51호

##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25일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02.25. ~ 2019.03.11(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 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 가. 납부기한 : 2019년 5월 31일까지
  -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19년 5월 10일**

####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3)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공시송달대상

연번	회계연도	부과번호	대상자	우편물 송달주소	적발차량	과태료부과일	처분과태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역	반송사유
1	2018	000500	김**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 (천곡동, 한양2차아파트)	경북98사57**	2018.11.26~ 2019.01.31	500,000	2018.05.15. 14:22	남동구 논현동 소재로	폭0.49미터초과 (폭2.99미터)	반송 (이사감)
2	2018	000505	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 (작전동, SK오피스텔)	인천07마65**	2018.11.26~ 2019.01.31	300,000	2018.05.21. 12:05	부평구 청천동 평천로	폭0.18미터초과 (폭2.68미터)	반송(폐문 부재)
3	2018	000532	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1번길 **** (송의동, 이데아캐슬)	인천99아85**	2018.11.26~ 2019.01.31	300,000	2018.05.30. 09:50	서구 원창동 북향로	높이0.27미터초과 (높이4.27미터)	반송(폐문 부재)
4	2018	000583	전**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 (남북동)	경기98자99**	2018.10.25~ 2018.12.31	500,000	2018.06.14. 14:58	중구 향동 축항대로	축하중1.70톤초과 (3축하중11.70톤)	반송(폐문 부재)
5	2018	000605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411번길 ***** (학익동, 유림빌라)	인천99아70**	2018.10.25~ 2018.12.31	500,000	2018.06.20. 08:17	남동구 구월동 용천로	폭0.49미터초과 (폭2.99미터)	반송(폐문 부재)
6	2018	000602	황**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47번길 **** (상산동, 삼보아파트)	인천03마61**	2018.10.25~ 2018.12.31	300,000	2018.06.20. 09:01	서구 원창동 북향로	폭0.28미터초과 (폭2.78미터)	반송(폐문 부재)
7	2018	000606	이**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선로 50 , **** (원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서울07나53**	2018.08.29.~ 2018.10.31	1,000,000	2018.06.20. 11:00	연수구 옥련동 비류대로	폭0.58미터초과 (폭3.08미터)	반송(폐문 부재)
8	2018	000612	김**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121번길 **** (감전동)	대구98바28**	2018.10.25~ 2018.12.31	500,000	2018.06.25. 14:47	중구 향동 축항대로	폭0.49미터초과 (폭2.99미터)	반송(폐문 부재)
9	2018	000622	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광로 **** (가야동)	부산95아27**	2018.10.25~ 2018.12.31	500,000	2018.07.03. 14:45	중구 향동 인종로	축하중1.10톤초과 (5축하중11.10톤)	반송(폐문 부재)
10	2018	000653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9 , **** (옥련동, 흰별오피스텔)	서울07가88**	2018.11.26.~ 2019.01.31	300,000	2018.07.17. 10:29	중구 신흥3가 서해대로	폭0.18미터 초과(폭2.68미터)	반송(폐문 부재)
11	2018	000661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45번길 **** (송의동, 롯데탑스빌)	인천07마63**	2018.10.25~ 2018.12.31	300,000	2018.07.23. 13:50	서구 석남동 봉수대로	폭0.25미터 초과 (폭2.75미터)	반송(폐문 부재)
12	2018	000678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9 , **** (옥련동, 흰별오피스텔)	서울07가88**	2018.11.26.~ 2019.01.31	300,000	2018.07.27. 09:15	중구 신흥동 제물량로	폭0.18미터 초과 (폭2.68미터)	반송(폐문 부재)
13	2018	000687	양**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하늘로 96 , **** (청라동, 청라제일풍경채2차에듀 앤파크)	인천07마61**	2018.10.25~ 2018.12.31	300,000	2018.07.31. 09:47	남구 송의동 석정로	폭0.40미터 초과 (폭2.90미터)	반송(폐문 부재)
14	2018	000766	박**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8 , **** (미룡동, 미룡2차대명아파트)	인천07마65**	2018.11.26.~ 2019.01.31	1,000,000	2018.09.04. 10:26	중구 신흥동 축항대로	폭0.89미터 (폭3.39미터)	반송 (이사감)
15	2018	000790	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14 , ***** (용양휴먼시아)	전남99사71**	2018.11.26~ 2019.01.31	500,000	2018.09.11. 15:42	중구 향동 인종로	길이3.70미터 초과 (길이20.40미터)	반송(폐문 부재)

인천광역시월미공원사업소 공고 제2019-1호

## 2019년 월미공원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월미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월미공원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월미공원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
- 사업위치 : 월미공원 전통정원, 둘레길
- 사업기간 : 2019. 3 ~ 11월
- 사업비 : 25,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월미공원 숲해설 위탁 운영 사무 전반

####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9. 2. 20(수) ~ 2019. 2. 26(화)
- 접수기간 : 2019. 2. 27(수) ~ 2019. 2. 28(목), 09:00 ~ 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처 : 월미공원사업소 2층 공원운영팀

### 4.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6부  
(붙임 양식, 대표자 또는 법인 인감 날인되어야 함).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증빙자료 1부.
- 사업참여 전문인력 현황 1부.
- 발표용 PPT자료 1부 - 별도 메일(loislover@korea.kr)로 제출

####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한글로 작성,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 첨부

### 5. 제안서 평가

#### 1) 1차 서류심사(20점)

- 지원자격, 구비서류, 사업추진체계 등 위탁운영 적합여부 심사
- 서류심사 결과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유선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발표심사 실시

## 2) 2차 발표심사(80점)

- 평가일시 : 2019. 3. 6(수) 10:00 ~
- 평가장소 : 월미공원 문화관 2층 영상회의실
- 평가방법 :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사업신청자의 사업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신청자의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업체별 2명 내외 참석
    - 사업신청 전문업별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 사업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글로 대체
    -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6.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2019. 3. 7(목) ※ 문자 또는 유선통보
- 서류심사(20점)와 발표심사(80점) 합계 100점으로 고득점자 선정
- 선정된 사업자 포기 시 차순위자로 사업자 선정
- 평가결과 합계점수(7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

## 7. 협상 및 계약일정

- 협상일정 : 선정된 사업자에 별도 유선통보
  - 사업물량, 사업비 산출 및 집행 정산, 근무일지 관리 등 협상
- 계약체결 : 2019년 3월중 실시

## 8. 기타 유의사항

- 제안신청서 접수 전 모집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신청서 제출바람.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접수 이후 수정·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 해지 함.
- 발표심사 불참시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심사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시 인천의 공원 누리집 공문소식에 별도 공지하며 개별통보하지 않으니 수시확인바람.
- 문의처 : 월미공원사업소 공원운영팀(☎032-440-5916)

군·구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9-186호

##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강화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한 공인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8.

### 강 화 군 수

#### ○ 신조 및 폐기공인

구분	공인명	인영	서체 및 규격	신조사유	사용일	비고
신조	제1민원사무 내가면장인전용		한글 전서체 2.1cm×2.1cm	업무시 활용	2019.02.15.	인증기
신조	제2민원사무 내가면장인전용		한글 전서체 2.1cm×2.1cm	업무시 활용	2019.02.15.	인증기
폐기	민원사무 내가면장인전용		한글 전서체 2.1cm×2.1cm	-	2019.02.15.	인증기